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206-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국가 암검진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020년 국가 암 관리사업 일반 현황 1
- 2020년 국가 암 검진사업 주요 변경사항 6

01. 암검진 사업의 근거 및 목적

- 1. 사업근거 9
- 2. 사업목적 10
- 3. 사업배경 및 필요성 10
- 4. 사업추진 방향 11
- 5. 사업추진 경위 11

02. 암검진 사업의 대상자 및 검진방법

- 1. 사업대상자 15
 - 가. 암종별 대상자 기준(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15
 - 나.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17
- 2. 검진주기(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17
- 3. 암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참조) ... 18
- 4. 검진방법(부록 4 암검진실시기준 별표 1 참조) 18
 - 가. 위암 18
 - 나. 간암 20
 - 다. 대장암 21
 - 라. 유방암 23
 - 마. 자궁경부암 25
 - 바. 폐암 26
- 5. 검진비용 27

03. 암검진 사업의 절차

- 1. 사업추진체계 35
- 2. 사업계획 수립 36
-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36
- 4. 검진기관 지정 38
- 5. 검진실시 38
- 6. 검진결과 보고 및 검진비 지급 39
 - 가. 검진결과 보고 39
 - 나. 검진비용 청구 40
 - 다. 검진비 지급 40
 - 라. 검진비 환수 41
 - 마. 암검진기관 현지확인 및 재검진 42
 - 바. 예탁금 관리 44
- 7. 미수검자 독려, 수검자 사후관리 및 사업결과 보고 45
 - 가. 미수검자 독려 45
 - 나. 수검자 사후관리 45
 - 다. 사업결과 보고 46
- 8. 행정사항 46
 - 가. 검진비용에 대한 지급 46
 - 나. 예탁금 관리 46
 - 다. 홍보 등 관리비용 46
 - 라.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관리 47

04. 부 록

[부록 1] 2020년도 국가 암 검진표	51
[부록 2] 암 검진결과 기재요령	53
[부록 3]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	66
[부록 4] 암검진 실시기준	70
[부록 5]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109
[부록 6]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	110

표 목차

<표 1> 우리나라 주요 암 사망자수 및 암 사망률(2018년)	1
<표 2> 5년 암 순 생존율 국제 비교	2
<표 3> 2018년 건강보험 신규 및 전체 암 등록환자 현황	3
<표 4> 간암발생고위험군 질병코드	16
<표 5> 국가암검진사업 검진 비용	28
<표 6> 암검진사업 검진비 환수 절차	43

그림 목차

<그림 1> 2018년 주요 암 건강보험 재정지출	3
<그림 2> 위암 검진 절차	19
<그림 3> 간암 검진 절차	20
<그림 4> 대장암 검진 절차	22
<그림 5> 유방암 검진 절차	23
<그림 6> 자궁경부암 검진 절차	25
<그림 7> 폐암 검진 절차	26

2020년 국가 암 관리사업 일반 현황

1 암발생·사망 및 부담

□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로 암환자가 증가

- 연간 23만 2천여 명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고, 7만9천여 명이 암으로 사망('83년 사망 원인 발생 이래 1위)
- '18년도 사망원인 : 암(26.5%), 심장 질환¹⁾(10.7%), 폐렴(7.8%), 뇌혈관 질환(7.7%), 고해적 자해(자살, 4.6%)

표 1 우리나라 주요 암 사망자수 및 암 사망률(2018년)

(단위 : 명/10만 명)

순위	전 체		남 자		여 자	
	암 종류	사망자수 (조사망률)	암 종류	사망자수 (조사망률)	암 종류	사망자수 (조사망률)
	모든 암	79,153(154.3)	모든 암	48,898(191.0)	모든 암	30,255(117.7)
1	폐 암	17,852(34.8)	폐 암	13,188(51.5)	폐 암	4,664(18.1)
2	간 암	10,611(20.7)	간 암	7,790(30.4)	대장암	3,863(15.0)
3	대장암	8,786(17.1)	위 암	5,083(19.9)	췌장암	2,843(11.1)
4	위 암	7,746(15.1)	대장암	4,923(19.2)	간 암	2,821(11.0)
5	췌장암	6,036(11.8)	췌장암	3,193(12.5)	위 암	2,663(10.4)

※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환경변화, 최근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암 발생 증가

1) 심장질환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및 기타 심장질환이 포함

■ 우리나라 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위암, 결장암/직장암(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2010-2014년 5년 생존율은 각각 68.9%, 71.8%/71.1%, 27.2%, 77.3%로, 미국의 33.1%, 64.9%/64.1%, 17.4%, 62.6%에 비해 높음

표 2 5년 암 순 생존율* 국제 비교

(단위: %)

암종	한국			미국 (‘10-’14)	영국 (‘10-’14)	일본 (‘10-’14)
	(‘00-’04)	(‘05-’09)	(‘10-’14)			
위	48.6	61.1	68.9	33.1	20.7	60.3
결장	60.5	68.1	71.8	64.9	60.0	67.8
직장	60.8	68.1	71.1	64.1	62.5	64.8
폐	15.3	19.9	25.1	21.2	13.3	32.9
유방	79.5	84.0	86.6	90.2	85.6	89.4
간	15.3	22.4	27.2	17.4	13.0	30.1
전립선	76.0	87.3	89.9	97.4	88.7	93.0
췌장	7.6	8.4	10.5	11.5	6.8	8.3
자궁경부	76.0	77.0	77.3	62.6	63.8	71.4
백혈병**	73.1	78.6	84.4	89.5	92.2	87.6

Allemani C, Matsuda T, Di Carlo V, Harewood R, Matz M, Nikšić M, et al. Global surveillance of trends in cancer survival 2000–14 (CONCORD–3): analysis of individual records for 37,513,025 patients diagnosed with one of 18 cancers from 322 population-based registries in 71 countries. Lancet 2018;391(10125):1023–1075. doi: 10.1016/S0140-6736(17)33326-3.

* 세계 암 생존 표준가중치(International Cancer Survival Standard weights)를 이용한 연령표준화 순생존율 (age-standardized net survival), 백혈병을 제외하고는 15–99세 성인

** 0–14세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aemia)

▣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막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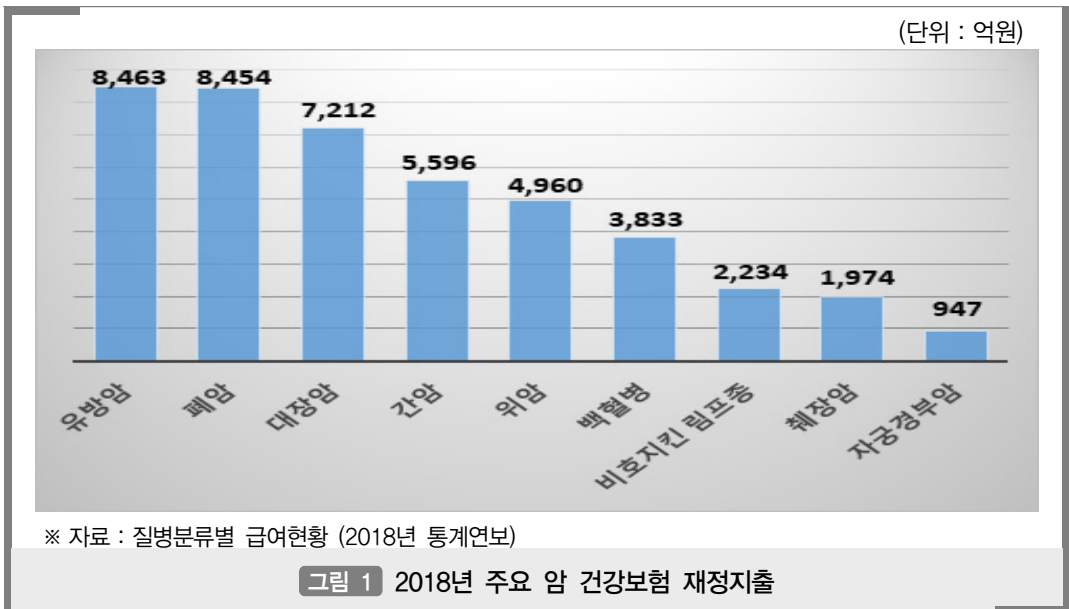
- 2018년 건강보험 암 진료환자 1,477,252명으로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는 비보험(선택 진료, 초음파, 병실료차액 등)부분을 제외하고도 총9조 92억원으로 나타남. 이 중 91.3%인 8조 2,226억원을 보험급여비에서 지출

표 3 2018년 건강보험 신규 및 전체 암 등록환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신규	전체
계	309,541	2,170,526
위 암	33,273	157,921
유방암	30,393	182,096
대장암	31,968	137,242
간 암	20,681	73,171
폐 암	30,528	91,295
자궁경부암	4,759	26,420
기 타	230,297	1,326,867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있는 신규 및 전체 중증(암)환자 (2018년 통계연보)



※ 자료 : 질병분류별 급여현황 (2018년 통계연보)

그림 1 2018년 주요 암 건강보험 재정지출

2 관련 법령

법 률 명	제 정 일	최근개정일
○ 암관리법(법률 제15890호)	2003. 5. 29	2018. 12. 11
- 암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2004. 3. 5	2019. 7. 2
- 암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04호)	2004. 3. 29	2018. 12. 20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09. 3. 22	2019. 9. 27
-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3호)	2005. 3. 29	2019. 12. 20

3 주요기관 현황

□ 국가암관리위원회

- 암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 가능

□ 법인·단체

- 총 16개 단체
 - 특수법인(1) : 국립암센터
 - 사단법인(4) : 대한암협회,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혈액암협회, 대한통합암학회
 - 재단법인(11) : 한국여성암연구재단, 한국암연구소, 동탄암연구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부인암재단, 한국유방건강재단, 한국소아암재단, 국립암센터발전기금, 마텔암재단, 대한암연구재단, 그린벨재단

4 국립암센터 현황

▣ 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설립

- 2000. 1. 12. 국립암센터법 공포
- 2000. 3. 22. 국립암센터 법인 설립
- 2000. 10. 20. 진료 개시(환자중심의 센터제 운영)
- 2001. 6. 20. 국립암센터 개원
- 2005. 6. 20. 연구동 개관
- 2007. 6. 19. 국가암검진지원센터 및 양성자치료시설 개관
- 2010. 5. 31. 암관리법 개정안 공포
- 2014. 3. 1. 국제암대학원대학교 특수대학원 개교
- 2017. 3. 1.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전문대학원 확대
- 2017. 11. 23. 제7대 이은숙 원장 취임

▣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등으로 조직 구성

- 정원 1,969명에 현원 1,886명('20. 1. 1. 기준)
- 병상수 : 560병상, 대지 43,955㎡, 건물 116,956㎡

▣ 예산규모 5,086억원('20년 기준)

- 자체수입 3,263억원, 정부출연금 749억원, 기타 1,074억원

2020년 국가 암 검진사업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행(2019년도)	개정(2020년도)	페이지
I. 암검진 사업의 근거 및 목적 1. 사업근거	○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3호, 2019.1.4.)(부록4)을 근거로 함	○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73호, 2019.12.20.)(부록4)을 근거로 함	P.9
II. 암검진 사업의 대상자 및 검진방법 1. 사업대상자 나. 암검진 비용지원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2018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93,000원 이하 (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 소득월액보험료 : 사업소득(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 초과시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별도부과(2012년 신설)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94,000원 이하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2019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97,000원 이하 (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94,000원 이하	P.17
III. 암검진 사업의 절차 4. 검진기관 지정	○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지역보건법」 제18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강진단 등 신고서(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검진실시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함	○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지역보건법」 제23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강진단 등 신고서(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검진실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해야 함	p.38

01

암검진 사업의 근거 및 목적

1. 사업근거	9
2. 사업목적	10
3. 사업배경 및 필요성	10
4. 사업추진 방향	11
5. 사업추진 경위	11

01

암검진 사업의 근거 및 목적

1 사업근거

-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3호, 2019.12.20)”(부록 4 참조)을 근거로 함

○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 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암검진 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률,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검진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은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 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암관리법 시행령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 라 한다)의 선정 및 통보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②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검진주기 등)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암
 - 2. 간암
 - 3. 대장암
 - 4. 유방암
 - 5. 자궁경부암
 - 6. 폐암
- ②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2 사업목적

-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서 2018년 79,153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연간 약 23만여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암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이상 완치가 가능
-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사업이 필요

4 사업추진 방향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암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암검진 포함)을 시행하되 상호 연계성과 통일성을 강화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6대암)에 대하여 암검진을 실시하되,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으로 실시

5 사업추진 경위

- 1999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3종에 대한 검진 실시
- 2002년부터 검진대상을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까지 확대
- 2003년부터 검진대상을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까지 확대하고 대상 암종에 간암을 포함
- 2004년부터 대상 암종에 대장암을 포함
- 2005년부터 검진대상을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까지 확대

- 2006년부터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의 경감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검진대상을 확대
- 2008년도에는 암 검진기관의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신설하고 암종별 검진 질 지침 마련
- 2011년도에 직역에 관계없이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를 일원화(국민건강보험법 개정)하여 2012년도 대상자 선정시 반영
- 2015년도에는 자궁경부암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한하여 시작연령을 20세로 조정
- 2016년도에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연령을 전체 20세로 확대 실시하고 간암검진 주기를 6개월로 변경 실시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간암고위험군 선별검사 폐지
- 2017년도에 대장암검진 대상자 편의 제고(대장암환자의 국가대장암검진 유예, 대장내시경 이후 국가대장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같음)하여 2018년도 대상자 선정 시 반영
- 2019년도에 기존 암환자 국가암검진 유예제도에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환자 까지 확대하여 국가암검진에서 유예
- 2019년부터 대상 암종에 폐암을 포함
- 2020년도에는 보험료부과기준이 직장가입자 97,000원, 지역가입자 94,000원(2019년 11월 보험료 기준)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 실시

암검진 사업의 대상자 및 검진방법

1. 사업대상자 15
2. 검진주기(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17
3. 암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참조) 18
4. 검진방법(부록 4 암검진실시기준 별표 1 참조) ... 18
5. 검진비용 27

02

암검진 사업의 대상자 및 검진방법

1 사업대상자

가. 암종별 대상자 기준²⁾(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위 암 : 만 40세 이상 남녀
 - 위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위암검진 대상 유예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별표 3]에 의한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상병 코드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C16(위의 악성신생물)으로 산정특례를 신청한자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
 - 대장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 대상 유예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별표 3]에 의한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상병 코드 C18(결장의 악성신생물), C19(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신생물), C20(직장의 악성신생물), C21(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신생물)로 산정특례를 신청한자
 - 국가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는 대장내시경 수검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 대상 유예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 유방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유방암검진 대상 유예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별표 3]에 의한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상병 코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으로 산정특례를 신청한자

2) 암검진 대상 유예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암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가능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자궁경부암검진 대상 유예

※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별표 3]에 의한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상병코드 C53(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으로 산정특례를 신청한자

○ 간 암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간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간암검진 대상 유예

※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별표 3] 에 의한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상병코드 C22(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로 산정특례를 신청한자

-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간암발생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로서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로 의료이용을 한 경우 대상으로 선정함(표4 참조)

표 4 간암발생고위험군 질병코드

질 환 명	질병분류 코드(code)
간경변증 “*”는 0, 1, 2, 9를 의미	K702, K703(K7030, K7031), K74, K740(K740*), K741(K741*), K742(K742*), K743(K743*), K744(K744*), K745(K745*), K746(K746*), K765, K766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	B18, B180, B181(B1810, B1818), B182, B188, B189, Z225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B19, B190, B199

○ 폐 암 : 만 54-74세 중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 흡연자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해당연도 전 2년내 문진표 확인)

- 폐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까지 폐암검진 대상 유예

※ 「본인일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별표 3]에 의한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상병코드 C33(기관지의 악성신생물), C34(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로 산정특례를 신청한자

나.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 「암관리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암검진비용 중 수검자 본인부담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 ②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19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97,000원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94,000원 이하
- 다만, 대상자 선정 시 보험료 산정 기준 초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 등은 소급하여 산정한 보험료가 당시의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쳐 추가 등록
 - ※ 공단지사에서 추가 등록 후 공단본부는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 정보시스템에 등록
 - ※ 대상자 선정 기준 월의 보험료 정보가 없는 경우, 기준 월 대비 최근 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 ※ 직장가입자 휴직으로 인하여 국가암 검진 대상지에서 누락된 가입자(피부양자) 추가등록[휴직전월 보험료 적용]

☑ 사례

민원인 A씨는 2017년 암검진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건강보험료 기준(하위 50%이하) 초과로 비대상자로 분류되었음. A씨의 경우 대상자 선정 시 배우자가 직장건강보험가입자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아들의 피부양자로 기 등록되어 있었음. 이에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에 배우자의 피부양자자격으로 소급적용을 신청하였고 공단에서는 확인 과정을 거쳐 자격변동과 함께 당시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였으며 2017년 암검진대상자 선정시 지원 기준에 적합하여 추가로 암검진 대상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됨

2 검진주기(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위 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 간 암 : 6개월 간격으로 실시
- 대장암 : 1년 간격으로 실시
- 유방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 자궁경부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 폐암 : 2년 간격으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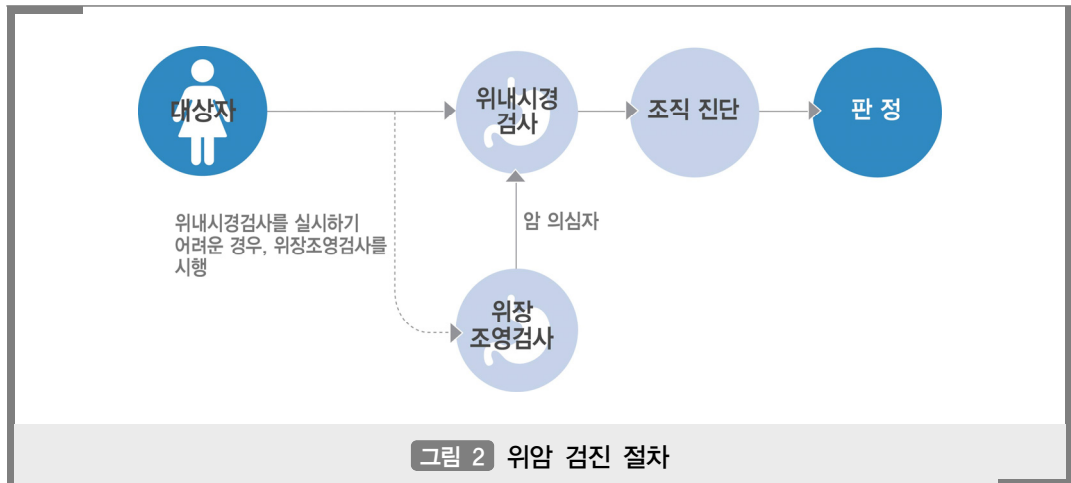
3 암검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참조)

-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기관의 자격을 갖춘 검진기관 중 암종별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검진기관에서 신청 가능. 다만,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건강검진기관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신청 가능
 - 유방암은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및 방사선사 각 1인 이상과 별표 2에 따른 유방암 검진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경우
 - 자궁경부암은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병·의원(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궁경부암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경우
 - 폐암은 일반검진기관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따른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하는 기관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따르는 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경우

4 검진방법(부록 4 암검진실시기준 별표 1 참조)

가. 위암

- 기본검사 : 위내시경검사를 기본검진방법으로 시행하고,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
- 추가검사 : 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위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 지원
 - ※ 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 검진시 유의사항

- 위내시경검사이시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함
 -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소독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1호) 및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 지침(질병관리본부, 2014) 참조
-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함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결과 보고(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 위암검진 결과통보서에는 위장조영검사, 위내시경검사, 조직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의사명을 기입
- 위암검진에서 검사의 결과를 기술하는 판독소견 또는 관찰소견³⁾과 해당되는 소견의 해부학적인 위치를 기술하는 병변위치를 기재하고 조직진단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입력
- 판독소견 또는 관찰소견은 소견의 중증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복수 기입이 가능하며 복수 기입할 경우에는 해당 소견 번호를 병변위치의 '괄호()'에 기입
- 조직진단 결과가 다수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결과를 기입

3) 위장조영검사인 경우에는 판독소견, 위내시경검사인 경우는 관찰소견

- 최종 판정은 1. 이상소견없음 또는 위염, 2. 양성질환, 3. 위암 의심, 4. 위암, 5. 기타()로 구분하며 검사 소견이 복수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하나만 기입하는데 '5. 기타()'의 경우에는 판독소견 또는 관찰소견에서 '9.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판정

※ 수검자의 문진결과, 상담 등에서 이전에 "위암 과거력"이 있을 경우에는 판정구분과는 별도로 '□ 기존 위암환자'에 체크

- 수검자 사후관리 : 최종 판정 결과 3. 위암 의심 또는 4. 위암으로 분류된 경우에 '사후 관리 대상'으로 정의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들에 대한 추가검사 및 암 확진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나. 간암

- 기본검사 : 간암 검진방법은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정성법 또는 정량법)를 병행
- 추가검사 : 비용지원 없음



- 검진시 유의사항
 - 반드시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함께 실시해야 함
 - 간 초음파 검사는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검진담당의사)가 직접 검사를 수행하도록 함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의 경우에는 측정방법(□ 정성법 □ 정량법)을 구분해야 하며 정량법⁴⁾으로 측정했을 경우에는 검사 수치와 함께 반드시 검사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제시

4)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기

- 결과 보고(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 간암검진 결과통보서에는 간초음파검사를 실시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의사명을 기입
 - 간암검진에서 간암검진 대상자의 간초음파검사의 검사소견 및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결과를 입력
 - 간암검진의 최종판정은 1. 간암 의심소견 없음, 2. 추적검사 요망(3개월 이내), 3. 간암 의심(정밀 검사 요망), 4. 기타로 구분하며 검사 소견이 복수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하나만 기입하는데 '4. 기타()'의 경우는 '검사소견'에서 '기타'를 체크했을 경우와 간 이외의 부위에 암이 발생했을 경우에 판정
 - ※ 수검자의 문진결과, 상담 등에서 이전에 '간암 과거력'이 있을 경우에는 판정구분과는 별도로 '□ 기존 간암환자'에 체크
- 수검자 사후관리 : 최종 판정 결과 3. 간암 의심(정밀 검사 요망)인 경우에 '사후관리 대상'으로 정의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들에 대한 추가검사 및 암 확진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다. 대장암

- 기본검사 : 분변잠혈검사(fecal occult blood test, FOBT)를 검진방법으로 함
- 추가검사
 - 분변잠혈검사 결과가 '잠혈반응 있음'인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실시하고 비용 지원 (단,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음'인 자가, 대장이중조영검사 실시 후 판독소견에서 '2. 대장용종 3. 대장암 의심, 4. 대장암'으로 판정 받은 경우 추가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과정 중 필요한 경우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 지원
 - ※ 단, 대장내시경검사서 수면내시경 또는 용종 제거 등에 대한 추가발생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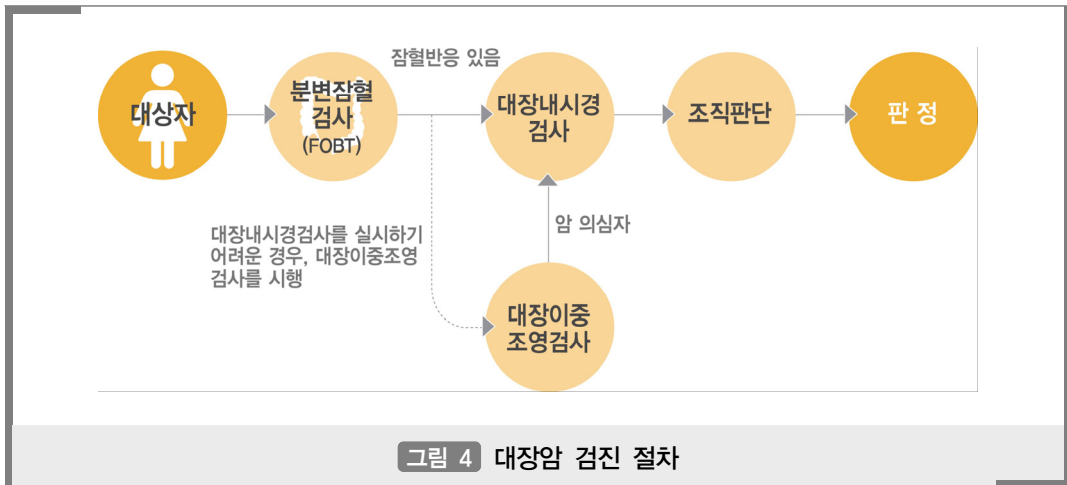


그림 4 대장암 검진 절차

○ 검진시 유의사항

- 분변잠혈검사는 사람의 분변에서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소량의 혈액(헤모글로빈)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검사 전 위양성 반응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⁵⁾을 확인하고 수검자에게 검체 채취, 보관 방법, 검체 채취 전 금기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 분변잠혈검사의 경우에는 측정방법(□ 정성법 □ 정량법)을 구분해야 하며 정량법⁶⁾으로 측정했을 경우에는 검사 수치와 함께 반드시 검사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제시
- 대장이중조영검사와 대장내시경검사는 담당의사가 검사 전 수검자의 공복상태 및 대장 정결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촬영
- 대장내시경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실시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소독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1호) 및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 지침(질병관리본부, 2014) 참조
- 대장이중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
- 대장내시경검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검진담당의사)가 검사를 수행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함

5) 최근 아스피린 또는 소염진통제 복용여부, 음주력, 육안적 혈변 여부, 혈뇨 여부, 생리기간 여부, 치질(치핵, 치열 등) 여부, 설사, 장염, 최근 변비 여부 등을 확인

6)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기

- 결과보고(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 대장암검진 결과통보서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대장내시경검사, 조직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의사명을 기입
 - 대장암검진에서 분변잠혈검사 결과와 양성 판정에 따른 추가 검사 결과를 함께 기재
 - 추가검사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의 결과를 기술하는 판독소견 또는 관찰소견과 해당하는 소견의 해부학적 위치를 기술하는 병변위치를 기재하고 조직진단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입력
 - 대장암검진에서 판독소견 또는 관찰소견은 소견의 중증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복수 기입이 가능하며 복수 기입할 경우에는 해당 소견 번호를 병변위치의 ‘괄호()’에 기입
 - 조직진단 결과가 다수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결과를 기입
 - 최종 판정은 분변잠혈검사만 받았을 경우에는 1. 잠혈반응 없음, 2. 잠혈반응 있음으로 판정하고, 분변잠혈검사 결과 ‘2. 잠혈반응 있음’ 판정 이후에 추가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따라 1. 이상소견없음, 2. 대장용종, 3. 대장암 의심, 4. 대장암, 5. 기타()로 구분하며 검사 소견이 복수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하나만 기입하는데 ‘5. 기타()’의 경우는 ‘판독소견’ 또는 ‘관찰소견’에서 ‘5. 기타’를 체크했을 경우에 판정
 - ※ 수검자의 문진결과, 상담 등에서 이전에 ‘대장암 과거력’이 있을 경우에는 판정구분과는 별도로 ‘□ 기존 대장암환자’에 체크
- 수검자 사후관리 : 최종판정결과 ‘2. 잠혈반응 있음(분변잠혈검사만 받았을 경우)’ 또는 ‘3. 대장암 의심, 4. 대장암(추가적인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실시한 경우)’으로 분류된 경우에 ‘사후관리 대상’으로 정의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들에 대한 추가검사 및 암 확진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함

라. 유방암

- 기본검사 : 검진방법은 유방촬영술(Mammography)을 검진방법으로 함



- 추가검사 : 비용지원 없음
- 검진시 유의사항
 - 유방촬영은 좌우 각각 내외사위촬영(mediolateral oblique view; MLO view)과 상하위 촬영(craniocaudal view; CC view) 두 가지 촬영 실시
 - 유방촬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함
- 결과보고(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 유방암검진 결과통보서에는 유방촬영을 실시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의사명을 기입
 - 유방암검진에서 수검자의 유방 치밀도를 판단하기 위한 유방실질 분포량, 유방촬영 결과를 기술하는 판독소견 및 해당되는 소견의 해부학적 위치를 기술하는 병변위치를 기재
 - 판독소견은 소견의 중증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복수 기입이 가능하며 복수 기입할 경우에는 해당 소견 번호를 병변위치의 '괄호()'에 기입
 - 최종 판정은 1. 이상소견없음, 2. 양성질환, 3. 유방암 의심, 4. 판정유보로 구분하며 검사 소견이 복수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하나만 기입하는데 최종 판정에서 '4. 판정유보'의 경우는 '판정곤란' 상태여서 재촬영이 필요하거나, 이상소견이 있어서 추가검사 또는 이전 검사와 비교가 필요한 경우로 치밀유방이면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판정 유보에 해당 없음
 - ※ 수검자의 문진결과, 상담 등에서 이전에 "유방암 과거력"이 있을 경우에는 판정구분과는 별도로 '□ 기존 유방암환자'에 체크
- 수검자 사후관리 : 최종판정결과 3. 유방암 의심, 4. 판정유보인 경우에 '사후관리 대상'으로 정의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들에 대한 추가검사 및 암 확진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 ※ 유방암 검진에서 사후관리 대상은 '3.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4. 판정유보' 판정자는 '3. 유방암 의심' 판정자 관리가 끝난 경우에 추가적으로 등록 관리함

마. 자궁경부암

- 기본검사 : 자궁경부세포검사(Pap smear test)를 검진방법으로 함



- 추가검사 : 비용지원 없음
- 검진시 유의사항
 - 검체채취는 해당 검진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검진담당의사가 반드시 직접 채취하는데 의료용 브러쉬(brush)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면봉은 사용할 수 없음
 - 자궁경부세포검사는 병리과 전문의 또는 대한병리학회의 인증을 받은 관련 분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함
 - 검진기관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기 전 상담·문진 시 수검자의 불쾌감을 유발 시키지 않도록 주의
- 결과 보고(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 자궁경부암검진 결과통보서에는 검체 슬라이드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검체상태⁷⁾ 및 자궁경부 선상피 세포의 유무를 기재하고 슬라이드의 판독결과를 기술하는 유형별 진단(세포진단)과 진단 가능한 감염성 질환이 관찰될 경우에는 □추가소견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
 - 최종 판정은 1. 이상소견없음, 2. 반응성 소견 및 감염성 질환, 3. 비정형 세포 이상, 4. 자궁경부암 전구단계 의심, 5. 자궁경부암 의심 6. 기타()로 구분하며 검사 소견이 복수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하나만 기입하는데 '5. 기타()'의 경우는 '유형별 진단(세포진단)'에서 '3. 기타(자궁내막세포 출현 등)'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판정
 - ※ 수검자의 문진결과, 상담 등에서 이전에 "자궁경부암 과거력"이 있을 경우에는 판정구분과는 별도로 '□기존 자궁경부암환자'에 체크

7) 검체상태에서 '2. 부적절'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도 결과 판정이 가능하면 자궁경부세포검사의 비용 지급('부적절' 판정 기준은 '자궁경부암 검진 질지침' 참조)

- 수검자 사후관리 : 최종판정결과 3. 비정형 세포 이상, 4. 자궁경부암 전구단계 의심, 5. 자궁경부암 의심인 경우에 '사후관리 대상'으로 정의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들에 대한 추가검사 및 암 확진여부를 확인하고 관리

바. 폐암

- 기본검사 :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함

폐암검진에 대한 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을 제공



- 추가검사 : 비용지원 없음
- 검진시 유의사항
 - 16열 이상의 CT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3.0mGy 이하의 방사선량으로 1.5mm 미만 절편 두께로 검사를 시행
 -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결과는 반드시 암검진실시기준 고시 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별표5에 의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 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 폐암검진 결과와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제공하며, 이상 소견에 대해 필요한 추가검사 종류와 부작용에 대해 상세 안내도 실시
- 결과 보고(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4호의2 서식 참조)
 - 폐암검진 결과통보서에는 저선량 흉부CT검사를 판독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의사명을 기입
 - 폐암검진에서 시행한 저선량 흉부CT검사의 방사선 선량을 기입하고, 이전 폐CT검사 유무를 확인하여 검사 일시를 기입
 - 판독소견은 폐결절이 다수인 경우 기록지에는 범주가 높은 6개까지 입력하되, 반드시 판정등급이 가장 높은 소견의 결절을 첫 번째로 기입

- 폐결절 외에 의미있는 소견이 발견된 경우에도 해당항목을 기입하고, 비활동성폐결핵 유무도 기입
- 최종 판정은 폐암검진 판정기준에 따라 1. 이상소견없음, 2. 양성결절, 3. 경계선 결절, 4. 폐암 의심으로 구분하며 검사 소견이 복수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하나만 기입, 5. 기타 (폐결절외 의미있는 소견)이 있는 경우 최종 판정에서 추가적으로 기입
 - ※ 수검자의 문진결과, 상담 등에서 이전에 “폐암 과거력”이 있을 경우에는 판정구분과는 별도로 ‘□ 기존 폐암환자’에 체크
- 폐암 검진 결과와 금연상담, 이상소견의 경우 필요한 추가검사 종류와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사후 결과 상담을 통해 제공
- 수검자 사후관리 : 폐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는 지속적인 금연지원 서비스 안내와 연계가 가장 중요함. 폐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3. 경계선 결절 또는 4. 폐암 의심)이 판정된 경우 폐암검진 후 ‘사후관리 대상’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추가검사 진행 여부를 검진기관에서 관리

5 검진비용

- 암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함)은 「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을 따름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을 부담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
 - 건강보험가입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다만,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
 - ※ 암검진실시기준 제10조에 따른 암검진비용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암검진비용은 공단이 100분의 90, 수검자가 100분의 10을 각각 부담(단,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

표 5 국가암검진사업 검진 비용⁸⁾

구 분	검사항목	분류번호(코드)	비 용(원)
공 통	1.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과 진찰 및 상담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가-1 (AA254) × 60%	6,920
	2.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26,980
위 압	1. 위내시경검사(비용총액) ○ 검사료	나-761(E7611)	69,870 (55,530)
	○ 내시경 세척소독료	나-799-1(EA010)	(12,300)
	○ 주사약제	약제금액표(아트로핀, 부스코판) • atropine sulfate 1ml ※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11830BIJ • hyoscine butylbromide 20mg ※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72330BIJ	(300) (400)
	○ 주사료	마-1(KK010)	(1,340)
	2. 조직검사 ○ 내시경하생검 ○ 생검용 FORCEP ○ 병리조직검사	나-854[나-761(E7611)×20%]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환액표 나-560(C5602)[나, Level B]	43,700~65,700 (11,110) (22,000) (32,590)
	3. 위장조영검사 ○ 비용총액(10"×12") (CR or DR) (Full PACS)	①+②+③+④ ①+③+①+④ ①+③+①+②+④	51,330~51,990 46,380~47,040 48,990~49,650
	① 촬영 및 판독료	다-201(HA010)	(38,720)
	② 필름료 및 재료대 - 10"×12": 6매	치료재료 금액표	(4,950)
	○ CR(DR), Full PACS ① CR(DR) ② Full PACS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2,610)

8) 당해연도 중 요양급여비용 변동시 국가암검진비용도 변경적용됨

구 분	검사항목	분류번호(코드)	비 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영제 및 전처치재료 ③ 바륨액 ④ 발포과립 	약제 금액표 • 바륨분말(bariumsulfate) 300g, 340g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113937APD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113938APD • 발포과립(sodium bicarbonate, tartaric acid) 4g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499700AGN	(7,800) (7,140) (520)
간 암	간암검사(비용총액) 1. 간초음파 검사 2.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 핵의학적방법으로 검사 한 경우	나-9447(1)(가) (EB441) 누-421(D1420) 누-421(D2420) 누-421(D2521)	<u>92,000~97,980</u> 87,660 4,340 8,000 10,320
	1. 분변잠혈검사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누-031(D0319) 누-031(D0320)	3,740 5,230
대장암	2. 대장내시경검사(비용총액) ○ 검사료 ○ 전 처치재료	나-766 (E7660) 전처치하제 • polyethylene glycol, KCl, NaCl,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drous) 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전처치하제 • 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16300APD 전처치하제 (magnesium sulfate anhydrous, potassium sulfate, sodium sulfate anhydrous)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34700ALQ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34700APD	<u>103,530~105,790</u> (84,130) (8,100) (9,360) (7,890) (7,100)
	○ 내시경 세척소독료	나-799-1(EA010)	(12,300)

구 분	검사항목	분류번호(코드)	비 용(원)
대장암	3. 조직검사 ○ 내시경하생검 ○ 생검용 FORCEP ○ 병리조직검사	나-854(나-766×20%)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액표 나-560(C5602)[나, Level B]	49,420~71,420 (16,830) (22,000) (32,590)
	4. 대장이중조영검사 ○ 비용총액 (14"×17":4매, 10"×12":6매) (CR or DR) (Full PACS)	①+②+③+④ ①+③+④+① ①+③+④+①+②	76,280 64,730 67,340
	① 촬영 및 판독료	다-203(HA032)	(54,200)
	② 필름료 및 재료대 (14"×17":4매, 10"×12":6매) ○ CR(DR), Full PACS ① CR or DR ② Full PACS	치료재료 금액표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11,550)
	○ 조영제 및 전처치재료 ③ 바륨분말 ④ 전처치하제	약제 금액표 • 바륨분말 (barium sulfate) 340g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113938APD • 전처치하제(Magnesium carbonate, citric acid) 250ml ※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200ALQ	- (2,610) (7,140) (3,390)
유방암	1. 유방촬영(양측) ○ 비용총액(18×24cm:2매) (CR or DR) (Full PACS) ○ 비용총액(18×24cm:4매) (CR or DR) (Full PACS)	①+② ①+① ①+①+② ①_1+②_1 ①_1+① ①_1+①+②_1	18,650 16,990 18,300 37,300 33,980 36,160
	① 촬영 및 판독료(2매) ①_1 촬영 및 판독료(4매)	다-127(G2702) 다-127(G2702) × 2	(16,990) (33,980)
	② 필름료(유방전용필름:2매) ②_1 필름료(유방전용필름:4매) ○ Full PACS 비용 ① CR or DR ② Full PACS(2매) ②_1 Full PACS(4매)	치료재료 금액표: 18×24cm 2매 치료재료 금액표: 18×24cm 4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1,660) (3,320) - (1,310) (2,180)

구 분	검사항목	분류번호(코드)	비 용(원)
자궁 경부암	1. 자궁경부세포검사	나-562(C5621)	<u>10,040</u>
폐암	1. 저선량 흉부CT 검사		<u>84,580</u>
	○ 촬영 및 판독료 (Full PACS)	다-245 (HA434)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u>(81,970)</u> <u>(2,610)</u>
	○ 사후 결과 상담	가-1 (AA256)	<u>15,000</u>

보건복지부



2020 국가 암검진 사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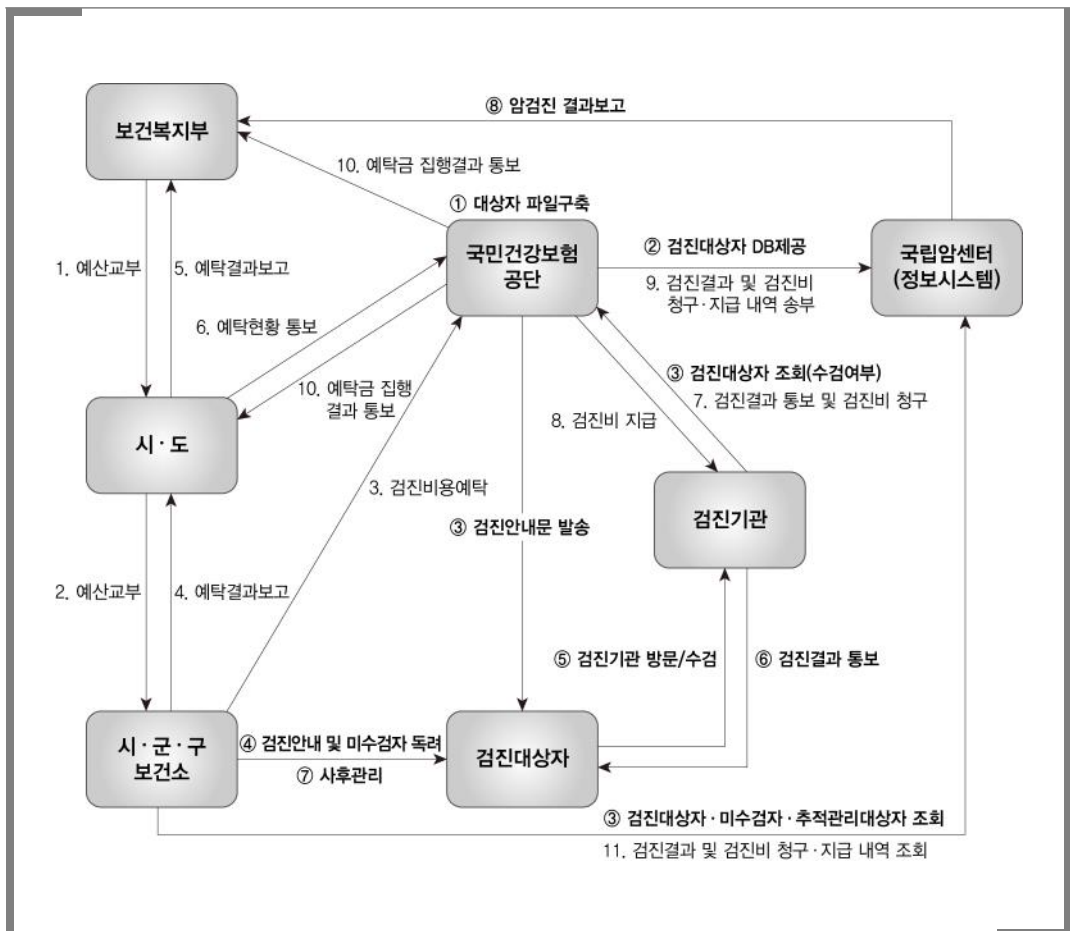
암검진 사업의 절차

1. 사업추진체계	35
2. 사업계획 수립	36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36
4. 검진기관 지정	38
5. 검진실시	38
6. 검진결과 보고 및 검진비 지급	39
7. 미수검자 독려, 수검자 사후관리 및 사업결과 보고 ...	45
8. 행정사항	46

03

암검진 사업의 절차

1 사업추진체계



2 사업계획 수립

- 공단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예약금 관리 및 암검진 홍보·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2020. 1월)
- 시·군·구 보건소는 홍보, 수검률 향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연중 계획을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 작성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공단은 「암검진실시기준」 제3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검진대상자를 선정(2019. 11월말 기준)
 - 검진대상자는 년 1회 공단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기간 중 새롭게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획득하더라도 당해연도 사업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 탈북자 또는 외국국적자가 기존 국적을 상실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 대상자 추가등록 (당해연도 해당종목에 한함)
 - 사업기간 중 자격변동이 있더라도 당해연도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의 자격은 유지되므로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 ※ 또한, 대상자 선정이후 사업기간 시작이전에(12월중) 자격이 변동된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동된 자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①대상자 선정 시 보험료 산정 기준 초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 등은 소급하여 산정한 보험료가 당시의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②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검진을 못 받아 전년도 국가암검진 미수검 암종이 있는 자의 경우, ③ 암검진실시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는 유예자 본인이 해당 국가암검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쳐 추가 등록하여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공단지사, 보건소에서는 민원인을 공단지사로 안내하여 추가 등록 후 공단본부는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 사업 정보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도록 조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지 불명으로 인해 국가 암검진 대상자에서 배제된 시설 수급권자에 대해 이들이 속해 있는 시설에서 공단지사, 보건소로 추가등록을 신청할 경우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로 추가 등록하여 검진 기회를 제공

- 공단은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에게 검진 실시방법·절차 및 검진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표지(이하 “건강검진표”라 한다)를 송부(2020. 2월)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자 통보시 검진대상자임을 확인하는 건강검진표를 함께 발송
 - 반송된 건강검진표는 관할 공단지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공단본부, 시·도는 현황을 파악
- 공단은 검진대상자 명단(의료급여수급권자,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을 보건소별로 분류하고 대상자 전산파일을 국립암센터에 송부(2020. 2월)
 - 대상자 전산파일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할 보건소 기호, 대상자 파일 구축일 현재 보험료 부과액 등을 수록
- 보건소는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https://ncs.ncc.re.kr>)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http://nhis.or.kr>)을 통하여 검진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음
 -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http://nhis.or.kr>)에서 검진대상 여부 조회 및 검진확인서 출력이 가능함

☑ 조회방법

☞ 개인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nhis.or.kr>) →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민원신청 → 개인민원 → 건강검진 → 대상조회 및 출력(공인인증서 필요)

☞ 검진기관

- 건강검진 기관포털 → 회원로그인 → 검진대상자 조회

- 보건소·공단지사는 관할구역 내 검진대상자 명단을 조회하고, 지역 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검진대상자들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함
 - 공단에서는 하반기에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재통보를 실시(2020. 8월)

4 검진기관 지정

-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암 검진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이어야 함
 - 공단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의 명단(전산파일)을 월1회(변동시 수시통보) 국립암센터로 송부
 - 국립암센터는 보건소에서 관할구역내 검진기관을 조회하고 주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명단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함
- 공단은 암검진기관 사후관리를 위하여 검진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및 검진결과 통보 기간 등 암검진 관리실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 실시함
- 암검진의 편의성 및 수검률 제고를 위하여 「암검진실시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읍·면·리에 한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음
 -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검진기관은 「지역보건법」 제23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강진단 등 신고서(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검진실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해야 함
 - ※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르면, “건강진단 등 신고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암검진실시기준 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등)에 따라 검진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보건소는 암검진기관에서 건강진단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및 이동검진 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공단지사에 출장검진 정보를 통보하여 출장검진기관 관리 협력

5 검진실시

- 검진대상자는 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 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건강검진표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음
- 검진기관은 「암검진실시기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진대상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검사항목별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검진기관이 보건소 또는 공단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

- 검진대상자가 건강검진표를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미 검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공단에서 재발급(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건소에서 재발급 가능)
-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여러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검사를 중복하여 받았는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기관포털(<http://sis.nhis.or.kr>)에서 확인
- 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로 하여금 암검진 문진표(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건강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하게 함
 - 이때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로부터 사업실적 등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적극 안내
 - 검진대상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의 활용 취지 등을 설명 후 동의서 작성 안내
 - 검진기관은 암검진 문진표,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 및 암검진 결과통보서를 사전에 준비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
- 검진실시기간은 당해연도 12월 말까지로 함. 단, 위암,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 폐암검진 이후 사후 결과상담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음.

6 검진결과 보고 및 검진비 지급

가. 검진결과 보고

- 검진기관은 「암검진실시기준」 제9조에 따라 암 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함)의 검진결과를 암검진 결과통보서(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제6호의 2 서식)에 기재하여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 본인에게 통보
 - ※ 검진기관은 암검진 결과통보서 미수령에 따른 추가 요청시 즉시 송부
- 결과통보서 작성시 암 검진 결과기록지(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내지 제14호의 3서식)와 암 검진결과 기재요령(부록 2)을 참조하여, 해당 검진결과를 빠짐없이 통보
 - 공단은 검진비 청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 검진항목의 결과가 모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한 항목이라도 누락된 경우 검진기관에 해당 항목의 검진 결과를 재요청

- 또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전산 입력된 결과통보서와 문진표를 함께 송부
- 공단은 암검진사업의 실적파악기간 단축을 위해, 1~2주 마다 암 검진비용 청구 지급액 결정 시점에 검진결과 등 관련 정보를 국립암센터에 송부하고, 검진비 지급 이후 청구 자료 및 지급자료를 재송부하며, 국립암센터에서는 이 자료를 정보시스템에 조속히 입력함

나. 검진비용 청구

- 검진기관은 「암검진실시기준」 제12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청구(폐암검진 사후 결과상담 통보서는 수검자 요청시 발급). 다만, 검진결과의 전산화를 위하여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전산자료로 청구
 1. 암검진 비용청구서⁹⁾
 2. 암 검진 결과기록지¹⁰⁾
 3. 암검진 문진표¹¹⁾
- 검진비 청구는 검진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당해 회계연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동 청구기간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당해연도 미지급 검진비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다. 검진비 지급

- 공단은 검진비용의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시·군·구 보건소로부터 매분기별로 예탁 받아 시·군·구 예탁금액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검진비를 지급
 - 공단은 검진예탁금을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관리하며, 검진비 청구액이 시·도 및 시·군·구의 총 잔액을 초과할 경우, 다음의 지급순위 원칙에 따름
 - 비용청구서 접수일자 순
 - 동일자 접수분에 대하여는 소액 우선지급

9) 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10) 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

11) 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호서식

- 공단은 「암검진실시기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의 검진비용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지급계좌에 검진비를 입금. 다만, 공단이 기재오류 등 청구 착오에 대한 정정을 해당기관에 요청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 공단은 「암검진실시기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암검진실시기준 별표3)”에 따라 정산·지급
- 검진기관이 공단에 검진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경우에는 “암검진 비용청구서(암검진실시기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서 전산자료로 공단에 신청

라. 검진비 환수

- 「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검진기관의 허위 및 부당 청구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결정하고, 해당 검진기관으로 지급 될 검진비용에서 상계처리(환수) 한다.
- 해당 검진기관이 휴·폐업되거나 상계가 1년간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공단은 그 내역을 해당 시·군·구(보건소)로 통보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사후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 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징수·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건(환수 결정 번호)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지급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암검진비용 환수·환불 이력 내역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용 및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사업 대상자 본인 부담비용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검진비용
 - 제공자료 : 위탁검진비용 환불현황, 휴·폐업 검진기관 및 상계가 1년간 완료되지 않아 현금고지 해야 하는 대상 건
 - 제공주기 : 사유발생 시 또는 월 1회(공단 → 시·군·구)
 - 제공방법 : 문서 통보 및 전산자료 연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 나의 업무 → 건강증진사업 → 공단자료연계 → 위탁검진비 환수·환불현황)
 - ※ 세부내용은 2020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제6편 II. 정산 및 부당이득 환수 참조

마. 암검진기관 현지확인 및 재검진

- 「암검진실시기준」 제13조에서 정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은 암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를 발견할 경우 해당 사실을 시·군·구(보건소)로 통보하여야 함
 - ※ 제13조에서 정한 사유란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를 의미
- 공단은 「암검진실시기준」 제13조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진자가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표 5 암검진사업 검진비 환수 절차

환 수 결 정(공단)	○ 암검진비용 환수 대상기관에 대한 환수 사유 확인 및 결정
상 계 처 리(공단)	○ 해당 검진기관으로 지급 될 검진비용에서 상계처리
사 후 관 리 통보(공단)	○ 해당 검진기관의 휴폐업 여부는 공단에서 월1회 파악하여 휴폐업 되었거나 상계가 1년간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공단은 그 내역을 사유발생시 (또는 월 1회) 해당 시·군·구(보건소)로 통보
납 부 통 지(보건소)	○ 납부기한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 반환비용 납부통지서를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송부 ○ 환수 대상 검진기관이 타 시·군·구 소재 시에는 검진비용 환수 납부통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토록 함 ※ 암검진비용 환수 대상 검진기관의 운영실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
납 부 독 촉(보건소)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함
체 납 처 분(보건소)	○ 독촉 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징수금액의 처리 (보건소, 시도)	○ 검진비용 중 국비분은 연도별 정산 후 시·도를 통해 반납(여입)처리 ※국비분 반납시 시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반납처리하도록 함

바. 예탁금 관리

- 시·군·구 보건소는 매분기 시작하는 달의 20일까지 암 검진비(국가부담분 및 지방자치단체부담분)를 공단에서 지정한 보건소별 수납가상계좌로 입금
- 예탁금 입금 계좌: 보건소별로 예탁금을 입금할 가상계좌는 공단에서 문서로 통보
- 공단은 17개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고 검진기관에서 청구한 검진비를 관할 보건소 별로 구분한 후, 보건소 별로 검진결과와 검진비 정산 파일(보건소 부담분)과 정산내역을 국립암센터에 송부
- 공단은 분기별 예탁현황 및 예탁금 집행 및 부족현황, 검진비 미지급현황을 “건강검진 기관포털 통계화면”에 등록(주1회)하고,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는 시스템에서 확인,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예탁금 현황 조회 가능(월1회 등록)
※ 조회 방법 [나의업무] - [보건사업] - [건강증진사업] - [공단자료연계] - [예탁금현황]
-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분기별 예탁현황을 취합하여 매분기 시작 월 25일까지 공단에 통보함으로써, 공단이 시·군·구별 실제 예탁금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함
-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예탁현황, 수검현황, 검진비 지급·미지급현황 및 홍보관리비 현황을 파악하여 검진비 과부족 여부를 확인
- 시·군·구 보건소는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할지역의 검진실적으로 파악하여 검진비 과부족 여부를 확인
- 국립암센터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건소별로 검진비 청구 및 지급내역을 정리하고 보건소에서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함
- 회계처리 및 결산
 - 공단의 재정과 구분 계리(공단 회계규정 준용)
 - 결산: 회계연도 종료 후 연도말(12.31.) 기준, 예탁금 정산잔액 및 이자 반납
 - 시·도는 공단에 예탁금이 부족하여 불입하지 못한 시·군·구는 차기년도 예탁 시 추가로 예탁하게 하고,
 - 예탁금 부족으로 검진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시·군·구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는 관할 시·군·구간 예탁금 전용을 결정하여 공단에 문서로 통보

7 미수검자 독려, 수검자 사후관리 및 사업결과 보고

가. 미수검자 독려

- 시·도, 시·군·구 및 공단본부·공단지사에서는 암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하여 암검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 홍보 캠페인 등 지역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
-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건강검진표 반송현황 및 미수검자 현황을 파악한 후 보건소 별로 관리하도록 독려
- 시·군·구에서는 미수검자 목록을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에서 받아 수검을 독려 하는데 활용하고, 반송된 건강검진표를 재발송하는 등 미수검자 관리를 적극 실시
- 공단은 관할 지사를 통하여 반송된 건강검진표를 재발송하고, 하반기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표를 일괄 발송하여 수검을 독려 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 안내 및 홍보
- 국립암센터에서는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미수검자 현황을 시·도 및 시·군·구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나. 수검자 사후관리

- 국립암센터에서는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후관리대상자 현황을 시·도 및 시·군·구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 보건소·공단지사는 수검자의 검진결과를 확인하고, 사후관리 대상자 중 조직진단 혹은 추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추가검사 혹은 진료를 독려하며 조직진단 혹은 추가검사 결과를 확인
- 조직진단 결과 암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절차에 따라 조기 치료를 안내하고, 정부의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및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시
- 검진결과에 대한 해석은 [부록 2]를 참조

다. 사업결과 보고

- 시·도는 사업결과에 대해서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파악하므로 별도의 보고 절차는 없으나, 2021년 2월 15일까지 관련 예산을 정산하여 보고
 - ※ 다만 사업실적 보고는 필요 시 할 수 있음

8 행정사항

가. 검진비용에 대한 지급

- 2018. 1. 1 ~ 2019. 12. 31일에 발생하여 청구한 검진비용은 시·군·구 예탁금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에 지급
 - ※ 검진비용 지급은 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분에 한하여 지급

나. 예탁금 관리

- 시·군·구는 홍보 및 관리비용을 제외한 적정 예탁금을 분기별로 공단에 송금
 - 단, 지자체 상황에 따라 조기 예탁 가능(~7월)

다. 홍보 등 관리비용

- 시·도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역단위 암 예방·홍보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20년도 암 예방·홍보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
- 시·도별 암검진 사업비는 검진 안내 등 수검률 향상을 위한 홍보 및 사후관리대상자 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위해 사용
 - ※ 보건소별 사업량, 지역여건 등에 따라 시·도에서 조정 가능
 - 홍보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홍보물품 제작 및 제비용, 검진비 환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라.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관리

-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립암센터에게 운영하도록 함
- 국립암센터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서 취득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자치단체의 국가암검진사업 담당자 변경이 있을 경우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에 신규등록 한 후 공문서를 이용하여 국립암센터에 통보해야 함
- 국립암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게 통보된 담당자 외에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2항제4호 및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6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세부내용은 [부록6]을 참조

보건복지부



2020 국가 암검진 사업안내

04


부 록

[부록 1] 2020년도 국가 암 검진표	51
[부록 2] 암 검진결과 기재요령	53
[부록 3]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	66
[부록 4] 암검진 실시기준	70
[부록 5]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109
[부록 6]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	110

2020년도 국가 암 검진표



**2020년
건강검진 안내문입니다**




“최근 10년간 본인의 검진결과” 확인

건강정보조회 포털사이트 <http://hwnis.ook.go.kr>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 (M건강보험/검진결과 조회)도 가능)

아들 때나 건강할 때나 **늘 고마운 친구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문 패이(지별 보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암
검진**




1단계 검진결과 암 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암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기검진으로 초기에 암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입니다.

만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위내시경 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 검사 선택적으로 시행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692원	만 40세이상 남, 여
위장 조영검사	4,638 ~ 5,199원	
위 내시경 검사	6,987원	
조직검사	4,370 ~ 6,570원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급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 위암 산정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검진 희망시 대상등록 가능)

**대장암
검진**



2단계 검진인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 결과 반응있음인 분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2단계 검진 실시기간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받습니다.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가 어려운 경우, 대장 이종조영 검사 선택적으로 시행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본인 부담 없음	만 50세이상 남, 여
분변잠혈검사		
대장 이종조영 촬영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		
조직검사		

※ 대장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 대장암 산정특례자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수급자는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검진희망시 대상 등록 가능)

• 51

폐암 검진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검진을 받습니다.



폐암검진은 저선량 흉부CT 검사와 검진결과 사후상담만 국가암검진에 해당하며, 검진결과 사후상담은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암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기검진으로 조기에 암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입니다.

만 54~74세 남녀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검진결과 사후상담 및 금연상담

폐암 발생 고위험군 기준

국가암검진 대상자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내 국가암검진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공연치료 참여자
해당연도 전 2년내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692원	만 54세~74세 해당 연령 남·여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CT 검사	8,458원	
검진결과 사후상담	1,500원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급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폐암 선명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된, 본인암진행시기 대상 등록 가능)

간암 검진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 1년에 2회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간 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혈액검사)를 받습니다.



공단검진 외에 별도로 받은 간염 검사 결과 B형 또는 C형 간염보유자는 검사 결과서를 장도에 제출하시면 지속적으로 간염 검사 대상으로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 예방과 진단, 건강한 생활습관이 암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간 초음파 검사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고위험군 기준

① 간경변증 ②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③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④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은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평소 확인하시고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692원	만 40세이상 남·여 고위험군
간초음파검사 +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9,200 ~ 9,798원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급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간암 선명특례자는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 암진행시기 대상 등록 가능)

여성암 검진

유방암 검진 : 만 40세 이상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 만 20세 이상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습니다.



유방암 검진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

유방촬영

유방 촬영술은 유방질환의 진단에 있어 무증상 초기 유방암을 발견하는 가장 필수 기본적인 방법으로 유방 압박으로 인한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692원	만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좌, 우)	1,699~3,730원	

※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급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자궁경부 세포 검사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생활이 없으신 분은 검사 전에 반드시 검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검사항목	10% 본인부담 비용	대상자
문진 및 진찰, 상담	본인 부담 없음	만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 세포검사	본인 부담 없음	

※ 자궁경부암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 유방암, 자궁경부암 선명특례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 (단, 본인 암진행시기 대상 등록가능)

부록 2

암 검진결과 기재요령

암 검진결과 기재요령

1. 위암

검사 사항	작성요령
(가) 위내시경검사	○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한 년/월/일을 기재한다.
관찰소건 ※ 최대 3개까지 복수 기입 가능	○ 위내시경검사의 관찰소건에 대하여 해당내용을 기재한다. ① 이상소견없음 ②-1 위염 ②-2 위축성위염 ②-3 장상피화생 ③ 위암의심 ④ 조기위암 ⑤ 진행위암 ⑥ 양성 위궤양 ⑦-1 위용종 ⑦-2 위선종 ⑧ 위 점막하종양 ⑨ 기타
관찰소건 ※ 최대 3개까지 복수 기입 가능	※ '⑨ 기타'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아래의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직접기입()'에 체크하고 해당내용을 직접 기재한다. □식도/위 정맥류 □식도염 □식도 점막하종양 □식도암 □십이지장 궤양 □십이지장 악성종양 □십이지장 점막하종양 □직접기입()
병변위치	○ 관찰소건이 ②-⑧ 번일 경우에 해당되는 소견의 해부학적 위치를 기술함에 있어 크게 두 가지(①, ② 항) 위치를 기재하되, 반드시 두 가지 위치 각각 체크한다. ① 항-① 위저부() ② 위체부() ③ 위전정부() ④ 위분문부() ② 항-① 소만() ② 대만() ③ 전벽() ④ 후벽() ※ 관찰소건이 복수일 경우에는 해당 관찰소건 번호를 병변위치 ①, ② 항의 '괄호()'에 각각 기입한다. ※ 위치가 '식도' 또는 '십이지장'인 경우에는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조직진단	○ 위내시경검사 결과 관찰소건이 ③-⑤번이거나 위내시경검사를 수행하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검사로 조직진단의 필요 여부를 기재한다. ① 시행 ② 미시행 ※ 수검자 결과통보서에 포함되지 않음
검사의사	○ 실제 내시경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의사명을 기재한다.
(나) 위장조영검사 (U.G.)	○ 위장조영검사를 실시한 년/월/일을 기재한다. ○ 위장조영검사가 시행된 장소를 구분해서 체크한다. □ 내원 □ 출장
판독소건 ※ 최대 3개까지 복수 기입 가능	○ 위장조영검사의 영상 소견에 대하여 해당내용을 기재한다. ① 이상소견없음 ② 위염 ③ 위암의심 ④ 조기위암 ⑤ 진행위암 ⑥ 양성 위궤양 ⑦ 위용종 ⑧ 위 점막하종양 ⑨ 기타 ※ '⑨ 기타'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아래의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직접기입()'에 체크하고 해당내용을 직접 기재한다. □ 식도/위 정맥류 □ 식도염 □ 식도 점막하종양 □ 식도암 □ 십이지장 궤양 □ 십이지장 악성종양 □ 십이지장 점막하종양 □ 직접기입() ※ 판독소건이 ③-⑤번일 경우 위내시경검사를 추가 실시할 수 있다.

검사 사항	작성요령
병변위치	○ 위내시경검사의 기재방법과 동일
판독의사	○ 실제 판독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의사명을 기재한다.
(다) 조직진단	<p>○ 조직검사 실시자에 대하여 생검용 FORCEP 사용 내용을 기재한다. <input type="checkbox"/> 재사용 <input type="checkbox"/> 1회용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 검진청구포탈시스템(http://sis.nhis.or.kr)에서 검진비 청구시 입력</p> <p>○ 조직진단 결과가 다수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진단을 기입한다.</p> <p>○ 조직진단 결과에 대하여 해당내용을 기재한다. <input type="checkbox"/> 1 이상소견없음 <input type="checkbox"/> 2-1 위염 <input type="checkbox"/> 2-2 위축성위염 <input type="checkbox"/> 2-3 장상피화생 <input type="checkbox"/> 3 염증성 또는 증식성 병변 <input type="checkbox"/> 4 저도샘종 또는 이형성 <input type="checkbox"/> 5 고도샘종 또는 이형성 <input type="checkbox"/> 6 암의심 <input type="checkbox"/> 7 암 <input type="checkbox"/> 8 기타 ※ '7' 암을 선택한 경우에는 아래의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input type="checkbox"/> 직접기입()'에 체크하고 해당내용을 직접 기재한다. <input type="checkbox"/> 관상샘암종(<input type="checkbox"/> 고분화, <input type="checkbox"/> 중분화, <input type="checkbox"/> 저분화) <input type="checkbox"/> 유두상샘암종 <input type="checkbox"/> 반지세포암종 <input type="checkbox"/> 위림프종(<input type="checkbox"/> 저도, <input type="checkbox"/> 고도) <input type="checkbox"/> 점액(샘)암종 <input type="checkbox"/> 샘편평상피암종 <input type="checkbox"/> 편평상피암종 <input type="checkbox"/> 소세포암종 <input type="checkbox"/> 미분화암종 <input type="checkbox"/> 신경내분비종양 <input type="checkbox"/> 직접기입() ※ '8' 기타를 선택한 경우에는 아래의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input type="checkbox"/> 직접기입()'에 체크하고 해당내용을 직접 기재한다. <input type="checkbox"/> 위의 비상피성종양 <input type="checkbox"/> 식도염 <input type="checkbox"/> 식도 암종 <input type="checkbox"/> 식도 점막하종양 <input type="checkbox"/> 십이지장 궤양 <input type="checkbox"/> 십이지장 암종 <input type="checkbox"/> 십이지장 점막하종양 <input type="checkbox"/> 직접기입()</p>
병리진단의사	○ 실제 병리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의사명을 기재한다.
(라) 판정 및 권고	
판정구분	<p>○ 위암검진 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한다. <input type="checkbox"/> 1 이상소견없음 또는 위염 <input type="checkbox"/> 2 양성질환 <input type="checkbox"/> 3 위암 의심 <input type="checkbox"/> 4 위암 <input type="checkbox"/> 5 기타 () ※ '5' 기타'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위장조영검사의 판독소견 또는 위내시경검사의 관찰소견에 '9'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에 판정한다.</p> <p>○ 위암검진 결과와 관계없이 수검자의 문진결과, 상담 등에서 이전에 '위암 과거력'이 있을 경우 체크한다. <input type="checkbox"/> 기존 위암환자 ※ 판정구분 체크 후 중복체크 가능함</p>
권고사항	○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암검진실시기준 별표 2 참조] 기입 이외에 별도로 의학적 소견을 300자 이내로 기입할 수 있다.
(마) 기타사항	<p>○ 검진기관은 위암검진 결과기록지 및 수검자용 결과통보서의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p> <p>○ 검진기관란에는 검진일, 판정일, 검진기관기호, 검진기관명, 판독의사, 검진의사, 병리진단의사, 판정의사의 면허번호 및 성명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고 판정의사가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p> <p>○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일'란에 수검자용 결과통보서를 송부한 일자를 기재한다.</p>

검 사 사 항	기 재 요 령
(다) 판정 및 권고 판정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암검진 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간암 의심소견 없음 ② 추적검사 요망(3개월 이내) ③ 간암 의심(정밀 검사 요망) ④ 기타 () ※ ② AFP 수치는 정상범위이나 1cm 미만의 새로운 고형종괴가 발견된 경우 또는 AFP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지만 초음파상 간암 의심소견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AFP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고 1cm 미만의 고형종괴가 있는 경우, AFP 수치와 관련없이 1cm 이상 고형종괴, 간문맥 혹은 간정맥 혈전, 담관확장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④ 상기에 해당되지 않고 발견된 기타 병변은 직접 기술함 ○ 간암검진 결과와 관계없이 수검자의 문진결과, 상담 등에서 이전에 ‘간암 과거력’이 있을 경우 체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간암환자 ※ 판정구분 체크 후 중복체크 가능함
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암검진실시기준 별표 2 참조] 기입 이외에 별도로 의학적 소견을 300자 이내로 기입할 수 있다.
(라)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기관은 간암검진 결과기록지 및 수검자용 결과통보서의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 검진기관관에는 검진일, 판정일, 검진기관기호, 검진기관명, 검사 의사, 판정 의사의 면허번호 및 성명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고 판정 의사가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일’란에 수검자용 결과통보서를 송부한 일자를 기재한다.

검 사 사 항	작 성 요 령
(마) 판정 및 권고 판정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변잠혈검사만 받았을 경우의 판정구분은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잠혈반응 없음 ② 잠혈반응 있음 ○ 추가검사 실시 이후 대장암검진 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상소견없음 ② 대장용종 ③ 대장암 의심 ④ 대장암 ⑤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⑤ 기타'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대장이중조영검사의 판독소견 또는 대장내시경검사의 관찰소견에 '⑦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에 판정한다. ○ 대장암검진 결과와 관계없이 수검자의 문진결과, 상담 등에서 이전에 '대장암 과거력'이 있을 경우 체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장암환자 ※ 판정구분 체크 후 중복체크 가능함
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암검진실시기준 별표 2 참조] 기입 이외에 별도로 의학적 소견을 300자 이내로 기입할 수 있다.
(바)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기관은 대장암검진 결과기록지 및 수검자용 결과통보서의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 검진기관란에는 검진일, 판정일, 검진기관기호, 검진기관명, 판독의사, 검사 의사, 병리진단 의사, 판정의사의 면허번호 및 성명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고 판정의사가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일'란에 수검자용 결과통보서를 송부한 일자를 기재한다.

검 사 사 항	기 재 요 령
(나) 판정 및 권고	
판정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암검진 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상소견없음 ② 양성질환 ③ 유방암 의심 ④ 판정유보 ※ 유방실질 분포량은 판정구분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치밀유방이면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① 이상소견없음' 판정을 내려야 한다. ※ '④ 판정유보'의 경우는 '판정곤란' 상태여서 재촬영이 필요하거나, 이상소견이 있어서 추가검사 또는 이전 검사와 비교가 필요한 경우로 치밀유방이면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판정 유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방암검진 결과와 관계없이 수검자의 문진결과, 상담 등에서 이전에 '유방암 과거력'이 있을 경우 체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기존 유방암환자 ※ 판정구분 체크 후 중복체크 가능함
권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암검진실시기준 별표 2 참조] 기입 이외에 별도로 의학적 소견을 300자 이내로 기입할 수 있다.
(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기관은 유방암검진 결과기록지 및 수검자용 결과통보서의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 검진기관란에는 검진일, 판정일, 검진기관기호, 검진기관명, 판독의사, 판정 의사의 면허번호 및 성명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고 판정의사가 직접 서명 하여야 한다. ○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일'란에 수검자용 결과통보서를 송부한 일자를 기재한다.

검 사 사 항	기 재 요 령
□ 추가소견	<p>○ 추가소견이 있을 경우에 체크하고 아래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한다.</p> <p>① 반응성 세포변화 ② 트리코모나스 ③ 캔디다 ④ 방선균 ⑤ 헤르페스 바이러스 ⑥ 질세균 분포변화 ⑦ 직접기입 ()</p>
병리진단 의사	○ 실제 병리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면허번호와 의사명을 기재한다.
(나) 판정 및 권고	
판정구분	<p>○ 자궁경부암검진 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에는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한다.</p> <p>① 이상소견없음 ② 반응성 소견 또는 감염성 질환 ③ 비정형 세포 이상 ④ 자궁경부암 전구단계 의심 ⑤ 자궁경부암 의심 ⑥ 기타 ()</p> <p>※ '⑥기타'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유형별 진단(세포진단)'에서 '③ 기타(자궁 내막세포 출현 등) ()' 소견이 있을 경우에 판정한다.</p> <p>○ 자궁경부암검진 결과와 관계없이 수검자의 문진결과, 상담 등에서 이전에 '자궁경부암 과거력'이 있을 경우 체크한다.</p> <p>□ 기존 자궁경부암환자 ※ 판정구분 체크 후 중복체크 가능함</p>
권고사항	○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암검진실시기준 별표 2 참조] 기입 이외에 별도로 의학적 소견을 300자 이내로 기입할 수 있다.
(다) 기타사항	<p>○ 검진기관은 자궁경부암검진 결과기록지 및 수검자용 결과통보서의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p> <p>○ 검진기관란에는 검진일, 판정일, 검진기관기호, 검진기관명, 검체채취 의사, 병리진단 의사, 판정의사의 면허번호 및 성명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고 판정의사가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p> <p>○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일'란에 수검자용 결과통보서를 송부한 일자를 기재한다.</p>

6. 폐암

검 사 사 항	기 재 요 령
(가) 저선량흉부 CT	○ 저선량흉부 CT를 실시한 년/월을 입력한다.
이전 CT 유무	○ 수검자의 이전 저선량흉부 CT 확인이 가능한 경우(해당 검진기관에서 촬영한 경우 또는 타 검진기관에서 저선량흉부 CT 촬영한 것이 CD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유무를 구분해서 체크하고, 촬영 일자를 입력한다.
선량 (CTDIvol)	CT 선량표에 나와있는 선량 중 CTDIvol을 mGy단위(소수점 두자리)로 입력한다.
폐결절 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결절이 다수인 경우 기록지에는 범주가 높은 6개까지 입력한다. ○ 반드시 판정등급이 가장 높은 소견의 결절을 첫 번째로 기록한다(수검자 결과 통보서는 첫 번째 결절에 대한 소견만 통보됨) ○ 폐결절 유무를 표시하되, 석회화 또는 지방 포함 결절은 따로 표시한다 ○ 결절위치: 우상엽, 우중엽, 우하엽, 좌상엽, 좌하엽 중 하나를 선택한다. ○ 결절 성상: 고형결절, 부분고형결절, 간유리 결절 중 하나를 선택한다. ○ 결절 크기: 단위는 mm로 폐창(lung window)에서 측정해야 하며 평균 직경 (가장 긴축의 직경과 수직인 직경의 평균치)을 반올림하여 정수로 보고하고 원형 결절은 단일 지름을 측정한다. 부분고형의 경우 고형성분과 간유리음영 성분에 대하여 각각 크기를 측정한다. (예, 고형성분 4 mm, 간유리음영 성분 10 mm일 경우 10(4)) ○ 추적검사소견: 판독하고 있는 CT가 ‘처음 CT’가 아니라, ‘추적 CT’인 경우라면, 해당 결절의 추적 검사소견으로 ‘새로생김’, ‘커짐’, ‘변화없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커짐의 기준은 평균 직경이 1.5 mm 초과되어 커지는 것이다. ○ 결절 특징: 범주 3, 4 결절에 대해 폐암시사 소견, 양성 결절 시사소견 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기관지내 병변	○ 기관지내 결절이 있으면 체크하고 위치를 입력한다.(가장 중요한 소견)
폐결절 외 폐암시사소견	○ 폐암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는 폐경화, 무기폐, 림프절비대가 있으면 체크하고 병변의 위치나 필요한 소견을 입력하고 그 밖에 폐암이 의심 되는 소견이 있으면 기타를 체크하고 소견을 입력한다
폐결절 외 의미 있는 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도 이상 관상동맥석회화, 중등도 이상 폐기종, 간질성 폐이상, 폐렴 및 활동성 폐결핵, 폐외약성물, 대동맥류 (≥5.5 cm), 다량의 흉수 또는 심낭 삼출 등의 임상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의미있는 소견이 있으면 해당 항목을 체크한다. 다수의 소견이 있으면 모두 체크한다. 관상동맥석회화가 있는 경우 정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중증 중에 선택하고 중등도 이상으로 판정 받은 경우 폐결절 외 의미 있는 소견으로 분류된다. ○ 그 외 기술이 필요한 소견들은 기타에 체크하고, 소견을 기술한다.

검 사 사 항	기 재 요 령
비활동성 폐결핵	○ 비활동성 폐결핵 소견 유무를 체크한다.
(나) 판정 및 권고	
판정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선량흉부 CT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Lung-RADS 판정 기준에 따라 범주 1부터 4까지로 구분되고 범주4는 4A, 4B, 4X로 세분된다. ○ S : 그 외 의미 있는 소견 ○ 최종판정은 폐결절의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S 소견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판정한다.
권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정구분에 관한 권고사항: Lung-RADS 추적관리 기준에 따라 권고 사항을 기술한다. ○ 폐결절 외 기타 소견에 대한 권고 사항: 폐결절외 의미있는 소견에 대한 권고사항을 기술한다.
(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기관은 폐암검진 결과기록지 및 수검자용 결과통보서의 모든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 검진기관에는 검진일, 판정일, 검진기관기호, 검진기관명, 판독의사(영상 의학과전문의)와 판정의사의 면허번호 및 성명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고 판정의사가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 검진기관은 '결과통보일'란에 수검자용 결과통보서를 송부한 일자를 기재한다.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암관리법 제50조(위임 및 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국가 암검진사업의 운영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산정, 결정, 납부와 암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암검진비용”이라 함은 검진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한 암검진비용청구서에 의하여 정산절차를 거친 후 검진기관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 ② “암검진비용 예탁금”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공단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액(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③ “분기별예탁금액”이라 함은 분기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단으로 통보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부담금 결정액을 말한다.
- ④ “전월예탁금잔액”이라 함은 전월까지 예탁된 금액에서 검진기관에 지급한 검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수수료)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업홍보비, 일반경비, 전산장비 활용에 따른 제반경비를 포함한 수수료를 공단에 지급한다.

- ② 공단은 암검진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연간 수수료를 산정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의 수수료 산정 내역을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 ③ 수수료의 신청 및 납부는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신청 절차에 따른다.

제4조(위탁기관 등) 공단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의 내용은 공단의 “사이버통합자금관리시스템”의 방식에 따른다.

제5조(계좌의 설치) ① 공단은 제6조의 위탁금융기관 중 중앙모점 또는 지점을 지정하여 예탁금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계좌의 설치 또는 변경을 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암검진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위탁금융기관 중앙모점 또는 지점에 지급용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암검진비용 지급계좌(이하 “지급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검진기관의 계좌불명 등의 사유로 암검진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미입금 반송관리계좌를 위탁금융기관 중앙모점 또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연도 소속 구분) 암검진비용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7조(예탁금의 관리) ① 공단은 예탁금을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예탁금의 관리와 그 회계를 건강보험재정 및 공단의 회계와 별도로 구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검진비용의 예탁과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는 공단의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단은 예탁금을 의료급여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예산교부내역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분기 각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 내역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예탁금의 납입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은 암검진비용 지급에 필요한 예탁금을 매 분기 시작 월 20일(단, 1분기는 둘째 월 20일)까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각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내역을 매 분기 시작 월 25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탁금의 수납확인 및 대장정리) ① 공단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분기별 예탁금 통보내역과 수납된 예탁금을 대조확인하고, 수납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내역을 각 시·도별 예탁금 원장에 반영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각 시·군·구별 암검진비용 지급내역을 예탁금 원장에 반영하고 시·군·구별 일일 예탁금 잔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예탁금의 이자관리) ① 공단은 예탁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연도 말 결산시점에 정산하고, 시·군·구별 배분금액을 해당 시·군·구별 예탁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시·군·구별 결산이자 발생내역서를 시·군·구 관할 시·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은 회계 연도 예탁금 총액에 대한 시·군·구별 예탁금 납부금액의 비율에 예탁금 수입이자 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2조(암검진비용의 지급원칙과 절차 등) ① 공단은 암검진비용의 청구건에 대한 심사결정이 완료된 때에는 시·군·구별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기일내에 검진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의 청구 오류로 인한 지급불능 건에 대해서는 심사결정전에 반송하여 새로이 청구하도록 안내하고, 정산

삭감 발생 시는 항목별, 사유별 삭감내역을 검진기관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암검진비용 정산결과 정상지급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암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암검진비용총괄표, 은행별지급의뢰서총괄표 및 계좌송금의뢰총괄표를 통하여 지급건수 및 금액, 원천징수세액, 채권압류금액 등을 확인한 후 암검진비용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2. 제1호의 지급 결정액 중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가감한 후 위탁금융기관에 송금을 의뢰한다.
 3. 공단은 암검진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암검진비용지급통보서를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검진기관별 소득세(주민세)원천징수액 집계표(차수별, 월별)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암검진비용 지급 대상건 중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내역을 각 시·군·구 및 검진기관별로 관리하고, 예탁금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시·도는 시·군·구간 예탁금 전용을 결정하여 문서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암검진비용의 지급 순위) 공단은 시·군·구별로 심사청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암검진비용을 지급 하되, 예탁금 잔액의 부족으로 동일일자 암검진비용을 전액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액 암검진비용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착오지급시 정산) 공단은 암검진비용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에 즉시 지급액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검진기관에 대하여는 차후 지급 할 암검진비용과 상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예탁금의 정산 등) ① 공단은 매 분기 예탁된 시·군·구별 예탁금 중에서 지급내역을 매 분기 단위로 정산한 후 예탁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예탁금잔액 등 그 정산내역을 공단의 건강검진기관포털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단으로부터 제공된 정산내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검진비 과부족 여부를 확인하고, 예탁금 부족으로 인한 검진비 지급의 지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군·구별 국고 및 지방비 배정의 조정과 추가 예탁 실시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16조(암검진비용의 환수) ① 암검진실시기준 제11조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검진기관의 허위 및 부당청구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 결정하고, 해당 검진기관으로 지급될 검진비용에서 상계처리(환수) 한다.

② 다만 해당 검진기관이 휴·폐업되거나 상계가 1년간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공단은 그 내역을 해당 시·군·구(보건소)로 통보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로 사후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암검진사업 경비 사용) 공단은 암검진 위탁업무수행 중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예탁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암검진 대상자 내역, 암검진비용 지급내역 및 암검진 결과통보서를 시·군·구별로 생성하여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의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암관리법 제27조에 의해 설립된 국립암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립암센터로 자료를 제공하고, 국립암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암검진 대상자 내역, 암검진비용 지급내역 및 암검진 결과(주1회 제공)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문서의 관리 등) 예탁금의 예탁과 지급에 관한 문서의 관리는 공단의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암검진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실시된 암검진으로 인하여 발생된 암검진비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3호

암검진 실시기준

제정	2005. 3.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21호
일부개정	2009. 3. 3.	보건복지가족부부고시 제2009- 38호
일부개정	2010. 2. 3.	보건복지가족부부고시 제2010- 22호
일부개정	2010. 4. 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14호
일부개정	2010. 12. 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9호
일부개정	2012. 2.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22호
일부개정	2013. 2. 1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21호
타법개정	2013. 12.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11호
일부개정	2014. 1. 2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11호
전부개정	2014. 11. 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2호
일부개정	2017. 12.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4호
일부개정	2018. 1.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1호
일부개정	2018. 12.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5호
일부개정	2019. 1.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3호
일부개정	2019. 7.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5호
일부개정	2019. 12. 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3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는 암검진(「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건강검진 중 암검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기준 등) 암검진 대상 암의 종류, 검진 주기, 검진 연령, 성별, 위험 요인 등은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따른다.

제4조(암검진 기준 등) ① 암 종류별 검사항목 및 그 대상자, 검진비용, 검사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암검진 결과의 판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암 종류별 검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암을 진단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다음표에 해당하는 상병코드로 산정특례를 신청한 자 : 산정특례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암검진대상 암의종류	상병코드(명)
위암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C16(위의 악성신생물)
간암	C22(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대장암	C18(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신생물) C20(직장의 악성신생물) C21(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유방암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경부암	C53(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폐암	C33(기관지의 악성신생물) C34(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2. 이 고시에 따른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 대장내시경 수검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제5조(암검진 실시 기관) 암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제5조의2(암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등)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폐암의 인력기준 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이란 별표5와 같다.

- ② 폐암검진은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련 법령이나 이 기준의 변경 등으로 검진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 이외의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국립암센터는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수료자 명단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연도의 검진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전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 결과를 각각 매년 1월말 까지 및 2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진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장(이하 “교육수료자명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료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암검진 실시 시기)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연령 및 검진 주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검 연도에 실시한다. 다만, 검사 항목의 선택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하는 위암 및 대장암의 2단계 이상 검진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암검진 실시 절차 등)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수검 예정자(이하 “수검예정자”라 한다)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사전에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검예정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다.

② 수검 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이하 “장애인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암검진기관은 수검 예정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수검 예정자 본인 여부 및 해당 검사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공단내의 유선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암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⑤ 암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9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⑥ 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 따라 내시경 기구를 소독 및 멸균하여 사용하고,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검진기관별 자체 관리대장이 별지 제15호 서식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출장검진)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암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출장하여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1. 읍·면·리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1의 도서·벽지

②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 10일전까지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강검진 등 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암검진 결과의 통보 등) ① 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완료한 후 암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암검진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의2서식까지의 결과통보서에 작성(해당 암검진에 한한다)하여 수검자에게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진기관의 건강검진자료 보관 및 관리는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다.

제10조(암검진 비용 지원 대상자)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직전년도 11월 기준으로 당해연도 수검예정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 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제11조(검진비용의 부담 등)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검진비용”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다만,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한다.

② 제10조제2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암검진 대상자중 제10조에 따른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자의 암검진비용은 공단이 100분의 90을, 수검자가 100분의 10을 각각 부담(자궁경부암, 대장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④ 보건소는 검진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기일까지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예탁하여야 한다.

⑤ 암검진기관은 수검자가 본인이 부담한 검진비용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암검진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검진비 계산서·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 서식 내역을 등록한 후 검진비용을 청구한다.

1.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검진비용 청구서.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은 제10조의 암검진 비용 지원 수검자분에 한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에 따른 암검진 결과 기록지
3.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문진표

② 제1호의 검진비용 청구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 동 청구 기간을 검진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미지급 검진비는 차기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검진비용을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④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정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에 따라 정산·지급하여야 한다.
- ⑤ 공단은 수검자가 암검진기관을 달리하여 다음 단계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 암검진의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해당 검진기관에 각각 지급할 수 있다.
- ⑥ 공단은 수검자가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다만, 수검자가 각각 다른 전문의로부터 각각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진찰·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암종별로 각각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⑦ 공단은 암검진기관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에 암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⑧ 공단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 별표1에서 정한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검진비를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13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① 공단은 암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검진기관 또는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공단이 암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사유 발생여부
- 2.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4의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 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 ③ 공단은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검자가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8조에 따른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 ⑤ 공단 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진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검진기관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① 공단과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와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건강검진실시기준 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송부하고, 공단 지사는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검진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검진자료의 수집·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세부사항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암검진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주 ^①	검사방법
공통	1.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 비용	가-1 (AA254)×60%	○ 암검진 대상자	○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대장내시경조영검사 등 방사선영상 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문진과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문진 및 상담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위암	2. 장애인 안전관리관리비	26,98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1. 위내시경 ○ 검사료	나-761 (E7611)	○ 위내시경 검사희망자 또는 위장조영검사에서 위암이 의심되는 자	○ 내시경검사를 기본검진방법으로 시행한다. ○ 위내시경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금식 여부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의사는 위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이물제거술을 실시할 수 있다. ^{주4)} ○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세척 - 세척 - 소독 - 헹굼 - 건조 - 보관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 내시경 세척소독료	나-799-1 (EA010)		

구 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주 ⁶⁾	검 사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사약제 ○ 주사로 <p>2. 조직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시경하 생검 ○ 생검용 FORCEP ○ 병리조직검사 <p>3. 위장조영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 및 판독료 <p>○ 필름료 및 재료대 - 10'×12': 6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DR), Fuji PACS <p>○ 조영제 및 전 처치재료</p>	<p>약제 금액표³⁾ (atropine sulfate 1ml, hyosine butylbromide 20mg) 상대가치분류번호 마-1</p> <p>나-854[나-761 (E7611)×20%] 치료재료 금액표¹⁾ 나-560 (C5602)[나. Level B]</p> <p>다-201 (HA010)</p> <p>치료재료 금액표¹⁾</p> <p>방사선영상진단료²⁾</p> <p>약제 금액표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륨액(barium sulfate) 300ml • 발포과립(sodium bicarbonate, tartaric acid) 3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장조영검사 희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직으로 걸어둔다. - 아트론펜(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1830BU) - 부스코핀(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72330B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와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와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와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는 수검자의 금식 여부 및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장조영검사는 직접촬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앙와위(supine) 이중조영 영상 - 복와위(prone) 단일조영 영상 - 기립위 압박 영상 - 식도하부 및 식도-위 연결 부위 영상 - 45도 우측후면시위(right posterior oblique, RPO) 영상 - 45도 좌측후면시위(left posterior oblique, LPO) 영상 ○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113937APD, 113938APD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499700AGN 	

구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주요)	검사방법
간암	1. 간초음파 검사	나-944가(1)가 (EB4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기준으로 선정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동연도 전 2년간 간염발생 고위험군(주요) 중 만 40세 이상자 - 과거년도 일반간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중 만40세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2.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정량법) - 정밀(정량법) • 핵의학적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누-421 (D1420) 누-421 (D2420) 누-421 (D2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일반검사(정성법) 또는 정밀검사(정량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에서 정밀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 및 측정 단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대장암	1. 분변잠혈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누-031 (D0319) 누-031 (D0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인 분변잠혈반응검사와 정량법인 분변혈색소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분변혈색소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2. 대장내시경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료 ○ 전 처치재료 	나-766 (E7660) • 진저지하제(polvetylene glycol, KCl, NaCl,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drous) 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다. ○ 대장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 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주) ⁶⁾	검 사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분류코드 72*, 성분코드 6'6300APD) • 전처치하제(magnesium sulfate anhydrous, potassium sulfate, sodium sulfate anhydrous)(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34700ALQ, 634700AP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주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시경 세척소독료 	<p>나-799-1 (EA0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처치 - 세척 - 소독 - 헹굼 - 건조 - 보관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크이프는 내시경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직으로 걸어둔다.
<p>3. 조직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시경하생검 ○ 생검용 FORCEP ○ 병리조직검사 <p>4. 대장(중)조영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 및 판독료 		<p>나-854(나-766×20%) 치료재료 (금액표^{주1)}) 나-560 (C5602)[나, Level B]</p> <p>다-203 (HA032) 치료재료 (금액표^{주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장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와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와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와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 있음'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 중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구 분	검사항목	검사비용(분류번호)	대상자주 ⁶⁾	검 사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름로 및 재료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 17" : 4매 - 10"× 12" : 6매 ○ CR(DR), Full PACS ○ 조영제 및 전 처치재료 	검사비용(분류번호) 치료재료 금액표 ^{주1)} 방사선영상진단료 ^{주2)} 약제 금액표 ^{주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륨분말(barium sulfate) 800g • 진저치하제(Magnesium carbonate, citric acid) 250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는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대장이중조영검사에서는 반드시 다음의 영상은 포함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하행결장, 비만곡, 횡행결장, 긴만곡, 상행결장 및 회맹부 영상 각 1매 - 에스결장 영상 2매 이상 - 대장 전체(overhead) 영상 ○ 대장이중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코드 721, 선분코드 113938APD - 분류코드 721, 선분코드 312200ALQ
유방암	1. 유방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 및 판독료 ○ 필름로 및 재료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측)유방전용필름:4매 - (편측)유방전용필름:2매 ○ CR(DR), Full PACS 	다-127 (G2702) • 양측: 다-127(G2702)×2회 • 편측: 다-127(G2702)×1회 치료재료 금액표 ^{주1)} 18×24cm 4매 18×24cm 2매 방사선영상진단료 ^{주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촬영 양측은 좌우 각 2회씩, 편측은(유방절제술을 받은 자 등) 각 1회 표준촬영법으로 촬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사위(mediolateral oblique, MLO) 촬영 - 상·하위(cranio-caudal, CC) 촬영 ○ 유방촬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자궁경부암	1. 자궁경부세검사	나-562 (C5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찰과 검체채취는 해당 검진기관의 의사가 반드시 직접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러쉬 사용은 원칙으로 하며 면봉은 사용할 수 없다. ○ 자궁경부세검사의 판독은 병리와 전문의 또는 교육받은 해당기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구 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주요	검 사 방 법
폐암	1. 저선량 흉부CT 검사 ○ 촬영 및 관독료 ○ Full PACS	HA434 방사선영상진단료 ^{주2)}	○ 만54~74세인 폐암 발생 고 위험군 ^{주1)} 중 다음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 Papanicolaou 염색법으로 실시한다. - 검체를 채취하여 슬라이드에 도말 후 즉시 슬라이드를 95% 에탄올에 담그거나 분무형 고정액(의료용)으로 고정한다. ○ 중복지공인 수검자의 경우 각각 검사를 실시한다.
	2. 시후 결과 상담 ^{주3)}	AA256	○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은 수검자	○ 16열 이상의 진산화·단층 촬영장치(CT)를 이용하여 3.0mGy 이하의 방사선량으로 1.5mm미만 절편 두께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결과는 반드시 검진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결과 상담의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폐암검진에 대한 결과 상담 및 금연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주1) 치료제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주2) 위장조영검사, 대장·중조영검사, 유방촬영, 저선량 흉부CT 검사 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영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 제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차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주3)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주4) 위나시경 및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실시한 이물제거술(자761) 또는 응중결제술(자770) 비용은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로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청구함

주5)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주6) 암검진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1을 따른다.

주7)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자를 말한다.
 주8) 저선량 흉부CT 검사 후 사후 결과 상담은 수검종료 연도의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기로 적용 하고, 「오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은 2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2]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암종	판 정 구 분		판 정 기 준
공통	기존 암환자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폐암환자로 치료 중이거나 재발하지 아니한 경우
	이상소견없음 또는 위염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거나, 위염만 있는 경우
	양성질환		양성병변이지만 추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위암의심		위암이 의심되어 단기간 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 조직진단 중 고도생종 또는 이형성인 경우 포함
	위암		(병리)조직진단결과 신규 또는 재발한 위암환자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암	위암		(병리)조직진단결과 신규 또는 재발한 위암환자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타 ()		위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판독소견, 관찰소견'의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간암의심 소견 없음		검사결과 간암 관련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추적검사 요망 (3개월 이내)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있어 3개월 이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 검사결과 AFP 수치는 정상범위이나 1cm 미만의 새로운 고형종괴가 발견된 경우 또는 AFP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 하지만 초음파상 간암의심 소견은 없는 경우
간암	간암의심 (정밀검사요망)		검사결과 간암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위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 검사결과 AFP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하고 1cm 미만의 고형종괴가 있는 경우, AFP 수치와 관련없이 1cm 이상 고형종괴, 간문맥 혹은 간정맥 혈전, 담관확장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기타 ()		간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관찰소견'에서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간 이외에 발생한 암종의 경우 기타로 기입)
	분변잠혈 검사	잠혈반응 없음	분변잠혈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잠혈반응 있음		분변잠혈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대장암	이상소견 없음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대장용종		대장용종이 발견되어 추가 또는 정기적인 검사나 관련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대장암의심		대장암이 의심되어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대장암		(병리)조직진단결과 신규 또는 재발한 대장암환자로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타()		대장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판독소견' 또는 '관찰소견'의 항목에서 '기타' 소견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암종	판 정 구 분	판 정 기 준
유방암	이상소견없음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 치밀유방이면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함
	양성질환	이상소견이 있으나 유방암과 관련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 없는 경우 ※ 유방내 임파선 등 2-9번의 판독 소견이 포함되지 않는 기타 소견이 있으면 직접 기입
	유방암의심	유방암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어서 즉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판정유보	'판정곤란'상태여서 재촬영이 필요하거나, 이상소견이 있어서 추가검사 또는 이전 검사와 비교가 필요한 경우 ※ 치밀유방이면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판정 유보에 해당하지 않음
자궁경부암	이상소견없음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반응성 소견 및 감염성 질환	결과기록지의 '유형별진단(세포진단)'에서 '음성'판정이면서 추가소견이 있는 경우
	비정형 세포 이상	결과기록지의 '유형별진단(세포진단)'에서 가장 심각한 소견이 '비정형 편평상피세포(일반)', '비정형 선상피세포(일반)'인 경우
	자궁경부암 전구단계 의심	결과기록지의 '유형별진단(세포진단)'에서 가장 심각한 소견이 '비정형 편평상피세포(고위험)' 또는 '저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비정형 선상피세포(중양성)', '상피내 선암종'인 경우
	자궁경부암 의심	결과기록지의 '유형별진단(세포진단)'에서 가장 심각한 소견이 '침윤성 편평세포암종' 또는 '침윤성 선암종'인 경우
	기타()	자궁경부암과 관련이 없는 기타질환 및 소견으로 추가검사,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암검진 결과기록지의 검사결과 '유형별진단(세포진단)'에서 '기타' 판정이 있을 경우 그대로 기입
폐 암	이상소견없음	폐결절이 없거나 확실한 양성(benign) 폐결절이 있는 경우 (Lung-RADS category 1)
	양성 결절	폐암의 가능성이 낮은 결절로 1년 후 정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Lung-RADS category 2)
	경계선 결절	폐결절이 양성으로 추정되지만 6개월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Lung-RADS category 3)
	폐암 의심	폐암이 의심되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Lung-RADS category 4)
	기타 (폐결절외 의미있는 소견)	폐결절 이외 폐암과 관련이 없는 폐질환 또는 기타 흉부질환 소견으로 추가검사 또는 진료에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 결과 상세 판정기준

범주	구분	범주	소견	추적관리
불완전		0	이전 흉부CT가 있으므로 비교가 필요함	이전 흉부CT와의 비교가 필요하거나 추가 폐암 검진 CT 요함
			폐의 일부 또는 전체가 판독이 어려움	
이상 소견 없음	결절이 없거나 확실한 양성 결절	1	폐결절 없음	
			특징적인 결절내 석회화: 전체, 중심성, 팽곤행, 동심원형 링모양 지방을 포함하는 결절	
양성 결절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폐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결절	2	고형 결절: 1) <6 mm 2) 새로 생긴 <4 mm	12 개월 후 연례 폐암 검진CT 요함
			부분고형 결절: 첫 검진에서 <6 mm	
		2b	간유리 결절: 1) <20 mm 또는 2) ≥20 mm이며 크기 변화 없거나 서서히 커짐 범주 3,4 결절로 3 개월 이상 추적검사에서 변화 없음 범주 3,4에 해당되나 양성 가능성이 높은 영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경계선 결절	양성의 가능성이 있지만 추적 검사가 필요함	3	고형 결절: 1) 첫 검진에서 ≥6 mm에서 <8 mm 또는 2) 새로 생긴 ≥4 mm, <6 mm인 결절	6 개월 후 저선량 CT
			부분고형 결절: 1) 전체 직경이 ≥6 mm으로 고형부분이 <6 mm 2) 전체 직경이 <6 mm의 새로 생긴 결절	
			간유리 결절: 첫 검진에서 ≥20 mm 또는 새로 생긴 결절 ≥20 mm	
폐암 의심	추가검사나 조직검사가 필요한 결절	4A	고형결절: 1) 첫 검진에서 ≥8 mm, <15 mm 2) 커진 <8 mm 3) 새로 생긴 ≥6 mm, <8 mm	3개월 후 저선량 CT; 8 mm 이상의 고형부분이 있는 결절일 경우 PET/CT 시행할 수 있음
			부분고형 결절: 1) ≥6 mm결절로 고형부분 ≥6 mm, <8 mm 2) 새로 생긴 또는 커진 고형부분이 <4 mm의 결절 기관지내 결절	
		4B	고형결절: 1) ≥15 mm 2) 새로 생긴 또는 커진 ≥8 mm 결절	흉부 CT, PET/CT, 또는 악성의 가능성과 동반질환을 고려하여 조직 검사, 8 mm 이상의 고형부분이 있는 결절일 경우 PET/CT 시행할 수 있음
			부분고형 결절: 1) ≥8 mm 고형부분을 가진 2) 새로 생긴 또는 커진 고형부분이 ≥4 mm의 결절	
4X	범주 3, 4 결절로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영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소견에 맞게 조치, 관리		
기타 (결절의 의미있는 소견)	폐암이 아니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병변	S	수식어로 범주 0-4 코드에 추가할 수 있음	
폐암 병력	과거 폐암병력	C	수식어로 범주 0-4 코드에 추가할 수 있음	

[별표 3]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

구 분	정 산 기 준	삭 감 액
가. 일부항목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상 진단,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 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해당항목 검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 입력한 경우 ○ 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상담 및 행정비용 "
나. 비대상자 검진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검사 비대상자에게 간염검사 실시 ○ 검진 실시기간(가능기간)을 경과하여 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 검진주기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해당 수검자 검진 비용 "
다.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암검진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암검진 영상판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영상의학과 전문의 포함)가 판독을 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별표 4]

암검진비용 환수 기준

구 분	위 반 행 위	환 수 금 액
가. 일부항목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암검진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 저선량 흉부CT 검사와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해당항목 검사비용
나. 검사방법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체 채취(자궁경부세포검사) 시 브러시를 사용하지 않고 면봉 사용 	해당항목 검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선량 흉부CT검사 시 장비기준 및 방사선량, 절편두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 저선량 흉부 CT 검사 방사선영상진단을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의 1/2 해당항목 검사비용
다.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암검진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암검진 영상판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영상의학과 전문의 포함)가 판독을 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가 해외체류기간 중 검진을 실시하고, 판정한 경우 ○ 입력 착오, 이중 청구 등 검진비 청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출장검진시 원심분리기 미 구비한 경우 ○ 검사 미필 장비(방사선, 특수의료) 사용한 검진인 경우 ○ 내시경 세척 및 소독 과정을 미준수 하였을 경우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해당항목 차액비용 해당항목 검사비용 " 내시경 세척 소독비용

폐암검진 교육과정

[별표 5]

1. 교육과정 운영주체

가.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폐암검진 교육과정”이라 한다) 운영주체는 암관리법 제11조와 시행령 제6조제5호, 제24조제2항1호 및 5호에 의한 국립암센터로 한다.

나. 국립암센터는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관련학회와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고, 동 교육과정을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에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별도 검진기관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검진기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과목 등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폐암검진 영상판독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폐암검진 결과상담 의사 교육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총계	5과목	160분	6과목	180분
1	국가암검진사업 개요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역할	30	국가폐암검진과 Lung-RADS 이해	30분
2	국가폐암검진과 질관리	30	폐암검진을 위한 저선량 흉부 CT의 효과와 문제점	30분
3	Lung-RADS에 따른 폐결절 관리	40	폐암 검진 대상자 사전, 사후 상담	30분
4	폐결절 외 중요소견	30	이상 소견자 관리와 진단	30분
5	폐암검진 결과 보고와 증례 학습	30	금연 상담 및 약물 치료	30분
			결절 외 의미 있는 병변에 대한 조치	30분

나. 모든 교육과정은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암검진 문진표

수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E-mail 주소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령방법 [] 우편 [] E-mail		
주 소					우편번호	

※ 암 검진(공통) 관련 문항

※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답에 '○'표시해 주십시오.

- 현재 신체 어느 부위에든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까?
 ① 예(증상: _____) ② 아니오
- 최근 6개월 간 특별한 이유 없이 5kg 이상의 체중감소가 있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체중감소 (_____ kg)
-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중에 현재 암에 걸리신 분이나 과거에 걸리셨던 분이 계십니까?

암의 종류	없다	모르겠다	있다 (복수선택 가능)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기타 (_____ 암)							

- 귀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검 사 명		검사 시기			
		10년 이상 또는 한적 없음	1년 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10년 미만
위암	위장조영검사(위장 X선 촬영)				
	위내시경				
유방암	유방촬영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대변 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대장 X선 촬영)				
	대장내시경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흉부CT				
간암	간초음파	한적 없음	6개월 이내	6개월에서 1년 사이	1년보다 오래전에

[별지 제2호서식]

위암 검진 결과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구분	검 사 항 목 (검 진 일)	결 과	판 정 <small>※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을 그대로 기입</small>	
위 암	검사명 (년 월 일)	소견 (병변위치) <small>※ 소견에 따라 괄호 안에 병변 위치 기입</small>		
		조직진단 <small>※ 조직진단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삭제</small>		
	권 고 사 항			
	판정일	년 월 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위암 검진 결과통보서

-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 위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로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된 경우 내시경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완치 가능한 암입니다.
- ※ 위암은 40세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40세이상 남녀 모두 2년 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장조영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1. 31.일까지 위내시경검사를 통해 위암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위암검진 결과가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복통, 속쓰림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사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 위암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수검자는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위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 위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관련 요건(건강보험료, 국가 암검진 수검 여부 등)을 갖춘 사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세 내용은 관할 보건소 문의)

귀하의 위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 암검진 결과통보서는 별첨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근거로 검사항목에 따라 변형해 작성

[별지 제3호서식]

간암 검진 결과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구분	검 사 항 목 (검 진 일)	결 과		판 정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을 그대로 기입	
간 암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년 월 일)				
	권 고 사 항				
	판정일	년 월 일	판정 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간암 검진 결과통보서					

-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 간암 검진은 만 40세이상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에 한해서 6개월마다 정기적인 검사(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 간암검진으로 모든 암을 판별할 수 없으므로 의심되는 증상(체중감소, 황달, 갑자기 진행되는 피로 등)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진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 간암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수검자는 산정특례 기간 동안 간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 간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관련 요건(건강보험료, 국가 암검진 수검 여부 등)을 갖춘 사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세 내용은 관할 보건소 문의)

귀하의 간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 암검진 결과통보서는 별첨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근거로 검사항목에 따라 변형해 작성

210mm × 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대장암 검진 결과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구분	검 사 항 목 (검 진 일)		결 과		판 정 <small>※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을 그대로 기입</small>
대 장 암	검사명 (년 월 일) <small>※ 최대 3개 (분변잠혈검사, 대장·중조영검사, 대장내시경검사)</small>	소견 (병변위치) <small>※ 분변잠혈검사만 시행했을 경우 소견·병변위치 없음 ※ 소견에 따라 괄호 안에 병변위치 기입</small>	권 고 사 항		
		조직진단 <small>※ 조직진단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삭제</small>			
	판정일	년 월 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대장암 검진 결과통보서

-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같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진료 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같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 최근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은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된 경우 내시경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완치 가능한 암입니다.
- ※ 대장암은 50세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50세이상 남녀 모두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분변잠혈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1. 31일 까지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통해 대장암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대장암 산정특례자 및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수검자는 대장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 분변잠혈검사만으로 모든 대장 질환을 판별할 수 없으므로 분변잠혈검사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의심되는 증상(체중감소, 대변 굵기의 변화, 혈변 등)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사 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 대장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관련 요건(건강보험료, 국가 암검진 수검 여부 등)을 갖춘 사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세 내용은 관할 보건소 문의)

귀하의 대장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 암검진 결과통보서는 별첨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근거로 검사항목에 따라 변형해 작성

210mm × 297mm[백상지(80g/m²)]

[별지 제5호서식]

유방암 검진 결과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구분	검 사 항 목 (검 진 일)		결 과		판 정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을 그대로 기입
유 방 암	유방촬영 (년 월 일)	판독소견 (병변위치) ※ 소견에 따라 괄호 안에 병변위치 기입	권 고 사 항		
	판정일	년 월 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유방암 검진 결과통보서					

-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같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같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은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 ※ 유방암 조기검진을 위해서 40세이상의 여성은 2년에 한 번씩 유방촬영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 유방암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유방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분과 유두 출혈이 있거나 유방에 멍우리가 만져지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사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 유방암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수검자는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유방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관련 요건(건강보험료, 국가 암검진 수검 여부 등)을 갖춘 사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세 내용은 관할 보건소 문의)

귀하의 유방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 암검진 결과통보서는 별첨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근거로 검사항목에 따라 변형해 작성

210mm × 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구분	검 사 항 목 (검 진 일)		결 과		판 정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을 그대로 기입
	자궁경부 세포검사 (년 월 일)	유형별 진단 (세포진단) ※ 검체 부적절일 경우 해당없음	권 고 사 항		
자 궁 경 부 암					
판정일	년 월 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서명)	
			의사명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통보서					

-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영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영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같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같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인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된 경우 비교적 간단한 수술적 치료로 완치 가능한 암입니다.
- ※ 성경험이 있는 20세 이상의 여성은 매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 자궁경부세포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비정상 자궁경부출혈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진결과 이상소견없음 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수검자는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자궁경부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관련 요건(건강보험료, 국가 암검진 수검 여부 등)을 갖춘 사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세 내용은 관할 보건소 문의)

귀하의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 암검진 결과통보서는 별첨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근거로 검사항목에 따라 변형해 작성

210mm × 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의2서식]

폐암 검진 결과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검 사 항 목 (검 진 일)	결 과	판 정 ※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과 기타 판정 결과를 기입
폐 암	저선량 흉부CT (년 월 일)	판독소견 (병변위치) ※ 가장 중요한 소견 중심 기록	
	권 고 사 항		
	판정일	년 월 일	판정 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폐암 검진 결과통보서

-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진료 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 폐암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정기검진을 받아야하고, 현재 흡연자의 경우 반드시 금연하셔야 폐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검진 후에도 폐암 의심되는 증상(체중감소, 객혈, 갑자기 진행되는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암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수검자는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폐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 폐암검진 결과에 대하여 검진을 받은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 및 금연상담(사후 결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폐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관련 요건(건강보험료 등)을 갖춘 사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세 내용은 관할 보건소 문의)

귀하의 폐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 암검진 결과통보서는 별첨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근거로 검사항목에 따라 변형해 작성

210mm × 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의3서식]

폐암검진 사후 결과상담 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폐암검진결과 관련:

금연상담 관련:

결과상담일	년 월 일	상담의사	면허번호
			의 사 명 (서명)

210mm × 297mm[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암검진비 계산서·영수증			
성 명	검 진 일 자	구 분	
		출장내원	
항 목		금 액	
본 인 부 담 금 ①			
비 급 여 ②			
보 험 자 부 담 금 ③			
총 수 납 금 액(①+②)		카 드	
		현금영수증	
		현 금	
		합 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성 명	인
※ 「현금영수증」란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이 표기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만을 기재합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한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암검진 비용청구서(공단 청구분)

청구기관		검진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청구처(지사)						()					
검진구분	검사항목	청구내역						(단위 : 원, 명)			
		검진비용			실시인원			청구금액			
		공단부담		수검자 일부부담	공단부담		수검자 일부부담	계 (G=H+I)	공단부담		
		100% (A)	90% (B)	10% (C)	100% (D)	90% (E)	10% (F)		100% (H=A×D)	90% (I=B×E)	
계	-										
위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위장조영검사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조직검사	위내시경검사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간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	일반									
		정밀									
정밀(핵의학적)											
대장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분변잠혈검사	일반(정상법)									
		정밀(정량법)									
	대장이종조영검사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조직검사	대장내시경검사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유방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유방촬영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자궁경부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저선량흉부CT 검사	Full PACS									
		사후 결과 상담료									

※ 계의 청구금액란은 각 검사항목의 청구금액 합계를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우리기관에서 20 ~ 20 까지 실시한 암검진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 : 20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첨 부 1. 암검진결과기록지 2. 암검진문진표	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건	※표는 공단에서 기재		

주) CR은 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은 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의미함

210mm × 297mm[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

암검진 비용청구서(보건소 청구분)

[] 건강보험 [] 의료급여

청구기관		검진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청구처(지사)						통보처(보건소)		
검진구분	검사항목	청구내역				청구금액		
		검진비용		실시인원		계	의료급여	
		의료급여 (A)	건강보험 (B)	의료급여 (C)	건강보험 (D)	(E=F+G)	(F=A×C) (G=B×D)	
계	-							
위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조직검사	위내시경검사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간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간초음파검사							
	의료급여	ALT(SGPT)						
		B형 간염바이러스	일반					
		표면항원 검사	정밀(해의학적)					
	C형 간염바이러스	일반						
		항체검사	정밀(해의학적)					
	혈청알파태아단백	일반						
정밀(해의학적)								
대장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분변잠혈 검사	일반(정성법)						
		정밀(정량법)						
	대장이종 조영검사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조직검사	대장내시경검사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유방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유방촬영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자궁경부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저선량흉부CT 검사	Full PACS						
	사후 결과 상담료							

※ 계의 청구금액란은 각 검사항목의 청구금액 합계를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우리기관에서 20 . . . ~ 20 . . . 까지 실시한 암검진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 : 20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첨 부 1. 암검진결과기록지	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2. 암검진문진표	건	※표는 공단에서 기재		

주) CR은 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은 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의미함

210mm × 297mm(백상지(80g/㎡))

[별지 제10호서식]

위암 검진 결과 기록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 보건소
주 소	우 - .				

구분	검 사 항 목 (검사일/검사장소)	검 사 결 과				
위암	위내시경 검사	관찰소견 ※ 최대 3개까지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1. 위염 2-2. 위축성위염 2-3. 장상피화생 3. 위암의심 4. 조기위암 5. 진행위암 6. 양성 위궤양 7-1. 위용종 7-2. 위선종 8. 위 점막하종양 9. 기타 []식도/위 정맥류 []식도염 []식도 점막하종양 []식도암 []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 악성종양 []십이지장 점막하종양 []직접기입()			
	년 월 일	병변위치 ※ 관찰소견 번호를 위치에 따라 팔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1-1. 위저부 () 1-2. 위체부 () 1-3. 위전정부 () 1-4. 위분문부 () 2-1. 소만 () 2-2. 대만 () 2-3. 전벽 () 2-4. 후벽 ()			
	내원	조직진단 ※ 결과통보 제외항목	1. 시행 2. 미시행			
		검사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위장조영 검사	판독소견 ※ 최대 3개까지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위염 3. 위암의심 4. 조기위암 5. 진행위암 6. 양성 위궤양 7. 위용종 8. 위 점막하종양 9. 기타 []식도/위 정맥류 []식도염 []식도 점막하종양 []식도암 []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 악성종양 []십이지장 점막하종양 []직접기입()			
	년 월 일	병변위치 ※ 판독소견 번호를 위치에 따라 팔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1-1. 위저부 () 1-2. 위체부 () 1-3. 위전정부 () 1-4. 위분문부 () 2-1. 소만 () 2-2. 대만 () 2-3. 전벽 () 2-4. 후벽 ()			
	[] 내원 [] 출장	판독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조 직 진 단	1. 이상소견없음 2-1. 위염 2-2. 위축성위염 2-3. 장상피화생 3. 염증성 또는 증식성 병변 4. 저도샘종 또는 이형성 5. 고도샘종 또는 이형성 6. 암의심 7. 암 []관상샘암종 []고분화 []중분화 []저분화 []유두상샘암종 []반지세포암종 []위림프종 []저도 []고도 []점액(샘)암종 []샘편평상피암종 []편평상피암종 []소세포암종 []미분화암종 []신경내분비종양 []직접기입() 8. 기타 []위의 비상피성종양 []식도염 []식도 암종 []식도 점막하종양 []십이지장궤양 []십이지장 암종 []십이지장 점막하종양 []직접기입()			
		병리진단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판정 및 권고	판 정 구 분	권 고 사 항			
	※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	※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 기입 이외에 별도로 300자 이내로 기입			
	1. 이상소견없음 또는 위염 2. 양성질환 3. 위암 의심 4. 위암 5. 기타 ()				
	[] 기준 위암 환자				
	결과통보일	년 월 일	판 정 의 사	면허번호	
	판 정 일	년 월 일		의 사 명	(서명)

210mm × 297mm(백상지(80g/m²))

[별지 제12호서식]

대장암 검진 결과 기록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 보건소
주 소	우 - ,				

구분	검 사 항 목 (검사일/검사장소)	검 사 결 과				
대장암	분변잠혈검사 년 월 일 [] 내원 [] 출장	[] 양성검사 : 1. 음성 2. 양성 [] 정량검사 : 1. 음성 2. 양성 검사결과: (ng/ml) [참고치: (ng/ml 이하)]				
	대장 내시경 검사 년 월 일	맹장삽입여부 ※ 결과통보 제외항목	1. 유 2. 무			
		장정결도 ※ 결과통보 제외항목	1. 적절 2. 부적절			
	관찰조건 ※ 최대 3개까지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대장용종 (크기: mm/절제처치 []실시 []미실시) 3. 대장암 의심 4. 대장암 5. 기타 [] 치핵 [] 비특이성 장염 [] 허혈성 장염 [] 궤양성 대장염 [] 크론병 [] 장결핵 [] 대장 개실증 [] 대장 점막하종양 [] 림프구 증식 [] 직접기입()				
	내원	병변위치 ※ 판독조건 번호를 위쪽에 따라 괄호 에 최대 3개까지 기입	1. 회장 말단부 () 2. 맹장 () 3. 상행 결장 () 4. 간 만곡 () 5. 횡행 결장 () 6. 비 만곡 () 7. 하행 결장 () 8. 에스 결장 () 9. 직장 () 10. 항문 ()			
		조직진단 ※ 결과통보 제외항목	1. 미시행 2. 시행			
	대장이중 조영검사 년 월 일	검사일자	면허번호	의사명		
		판독조건 ※ 최대 3개까지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대장용종 (크기: mm) 3. 대장암 의심 4. 대장암 5. 기타 [] 치핵 [] 비특이성 장염 [] 허혈성 장염 [] 궤양성 대장염 [] 크론병 [] 장결핵 [] 대장 개실증 [] 대장 점막하종양 [] 림프구 증식 [] 직접기입()			
		병변위치 ※ 판독조건 번호를 위쪽에 따라 괄호 에 최대 3개까지 기입	1. 회장 말단부 () 2. 맹장 () 3. 상행 결장 () 4. 간 만곡 () 5. 횡행 결장 () 6. 비 만곡 () 7. 하행 결장 () 8. 에스 결장 () 9. 직장 () 10. 항문 ()			
	내원	판독일자	면허번호	의사명		
조직진단		1. 이상소견없음 2. 염증성 또는 증식성 병변 3. 저도샘종 또는 이형성 4. 고도샘종 또는 이형성 5. 암의심 6. 암 [] 샘암종 [] 고분화 [] 중분화 [] 저분화 [] 점액(샘)암종 [] 반지세포암종 [] 샘편평상피암종 [] 편평상피암종 [] 소세포암종 [] 수질암종 [] 미분화 암종 [] 악성림프종 [] 신경내분비종양(맹장과 직장의 1cm 이하 중앙제외) [] 직접기입() 7. 기타 [] 신경내분비종양(맹장과 직장의 1cm 이하 중앙) [] 비상피성종양 [] 횡문암 [] 말단회장부위 암 [] 직접기입()				
판정 및 권고	판정구분	면허번호	의사명			
	※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		권 고 사 항 ※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 기입 이외에 별도로 300자 이내로 기입			
	1. 잠혈반응 없음 2. 잠혈반응 있음 또는 1. 이상소견없음 2. 대장용종 3. 대장암 의심 4. 대장암 5. 기타 () [] 기존 대장암 환자					
	결과통보일	년 월 일	판 정 의 사	면허번호	의 사 명	
판정일	년 월 일	(서명)				

210mm × 297mm(백상지(80g/㎡))

[별지 제13호서식]

유방암 검진 결과 기록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 보건소	
주소	우 - ,				

구분	검사항목 (검사일/검사장소)	검사결과
유방암	유방실질 분포량 ※ 결과통보 제외항목	1. 25% 미만 2. 25~50% 3. 51~75% 4. 76~100% 5. 유방실질내 인공물질 주입
	판독소견 ※ 최대 3개까지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종괴 3. 양성석회화 4. 미세석회화 5. 구조 왜곡 6. 비대칭 7. 피부 이상 8. 임파선 비후 9. 판정곤란 10. 직접기입 ()
	유방 촬영 년 월 일 병변위치 ※ 판독소견 번호를 위치에 따라 괄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 오른쪽</p> <p>⑦ 직접기입 ()</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 왼쪽</p> <p>⑦ 직접기입 ()</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width: 45%;"> <p>□ 오른쪽</p> <p>① 상외측 () ② 상내측 () ③ 하외측 () ④ 하내측 () ⑤ 유두하부 () ⑥ 액와부 ()</p> </div> <div style="width: 45%;"> <p>□ 왼쪽</p> <p>① 상외측 () ② 상내측 () ③ 하외측 () ④ 하내측 () ⑤ 유두하부 () ⑥ 액와부 ()</p> </div> </div>
	[] 내원 [] 출장	병리진단 의사

판정 및 권고	판정구분 ※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	권고사항 ※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 기입 이외에 별도로 300자 이내로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양성질환 3. 유방암 의심 4. 판정유보 [] 기존 유방암 환자			
	결과통보일	년 월 일	판정 의사	면허번호
	판정일	년 월 일	의사명	(서명)

210mm × 297mm[백상지(80g/m²)]

[별지 제14호서식]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기록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 보건소
주 소	우 - ,				

구분	검 사 항 목 (검사일/검사장소)	검 사 결 과			
자궁 경부암	중복자궁	1. 해당없음 2. 해당			
	검체 채취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검체상태 ※ 결과통보 제외항목	1. 적절 2. 부적절			
	자궁경부 선상피 세포 ※ 결과통보 제외항목	1. 유 2. 무			
	년 월 일 []내원 []출장	1. 음성 2. 상피세포 이상 [] 편평상피세포 이상 ① 비정형 편평상피세포 ([] 일반 [] 고위험) ② 저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③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④ 침윤성 편평세포암종 [] 선상피세포 이상 ① 비정형 선상피세포 ([] 일반 [] 중양성) ② 상피내 선암종 ③ 침윤성 선암종 3. 기타 (자궁내막세포 출현 등) ()			
	추가소견	1. 반응성 세포변화 2. 트리코모나스 3. 캔디다 4. 방선균 5. 헤르페스 바이러스 6. 질세균 분포 변화 7. 직접기입 ()			
	병리진단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판정 및 권고	판 정 구 분 ※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		권 고 사 항 ※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 기입 이외에 별도로 300자 이내로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반응성 소견 및 감염성질환 3. 비정형 세포 이상 4. 자궁경부암 전구단계 의심 5. 자궁경부암 의심 6. 기타 () [] 기존 자궁경부암 환자					
	결과통보일	년 월 일	판 정 의 사	면허번호		
	판 정 일	년 월 일		의 사 명		(서명)

210mm × 297mm[백상지(80g/㎡)]

[별지 제14호의2서식]

폐암 검진 결과 기록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 보건소
주소	우 - .				

구분	검사항목 (검사일/검사장소)	검사결과					
폐암	저선량 흉부 CT 년 월	이전 CT 유무	[] 없음 [] 있음 (촬영 일자: ____년 ____월)				
		선량 (CTDIvol)	____ mGy				
		폐결절 소견 ※ 최대 6개까지 기입	폐결절 유무	1. 무 2. 유(단일, 다수) 3. 석회화 또는 지방 포함 결절			
			결절 위치	① 우상엽 ② 우중엽 ③ 우하엽 ④ 좌상엽 ⑤ 좌하엽			
			결절 성상	1. 고형 2. 부분고형 3. 간유리			
			결절 크기	____ ()mm			
			결절특징	1. 폐암 시사소견 2. 양성결절 시사소견(2b) 3. 해당 없음			
		추적 검사소견	1. 변화 없음 2. 변화 있음 ① 새로 생김, ② 커짐 3. 해당없음				
		기관지내 병변	1. 없음 2.있음 (위치:)				
		폐결절 외 폐암시사소견	1. 해당없음 2. 폐경화 3. 무기폐 4. 림프절비대 5.기타 ()				
폐결절 외 의미있는 소견 ※ 중복 기입 가능	1. 없음 2. 관상동맥석회화 (중등도 이상) 3. 폐기종 (중등도 이상) 4. 간질성 폐이상 5. 폐렴 및 활동성 폐결핵 6. 폐외악성물 7. 대동맥류 (≥5.5 cm) 8. 다량의 흉수 또는 심낭 삼출 9. 기타 ()						
비활동성 폐결핵	1. 없음 2.있음						
판독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판정 및 권고	판정구분	권고 사항			
	1. 이상소견없음 2. 양성결절 3. 경계선 결절 4. 폐암의심 4A 4B 4X 5. 기타: 폐결절외 의미있는 소견(S) [] 기존 폐암환자	판정구분에 의한 권고 사항:			
		폐결절 외 기타 권고 사항:			
결과통보일	년 월 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판정일	년 월 일		의사명	(서명)	

210mm × 297mm[백상지(80g/m²)]

[별지 제14호의3서식]

폐암 검진 사후 결과상담 기록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 보건소
주 소	우 - ,				

상 담 내 용

폐암검진결과 관련:

금연상담 관련:

결과상담일	년 월 일	상담의사	면허번호	
			의 사 명	(서명)

210mm × 297mm[백상지(80g/m²)]

부록 5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

암의 종류	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
위암	2년	40세 이상의 남·여
간암	6개월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¹⁾
대장암	1년	50세 이상의 남·여
유방암	2년	40세 이상의 여성
자궁경부암	2년	20세 이상의 여성
폐암	2년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²⁾

1) :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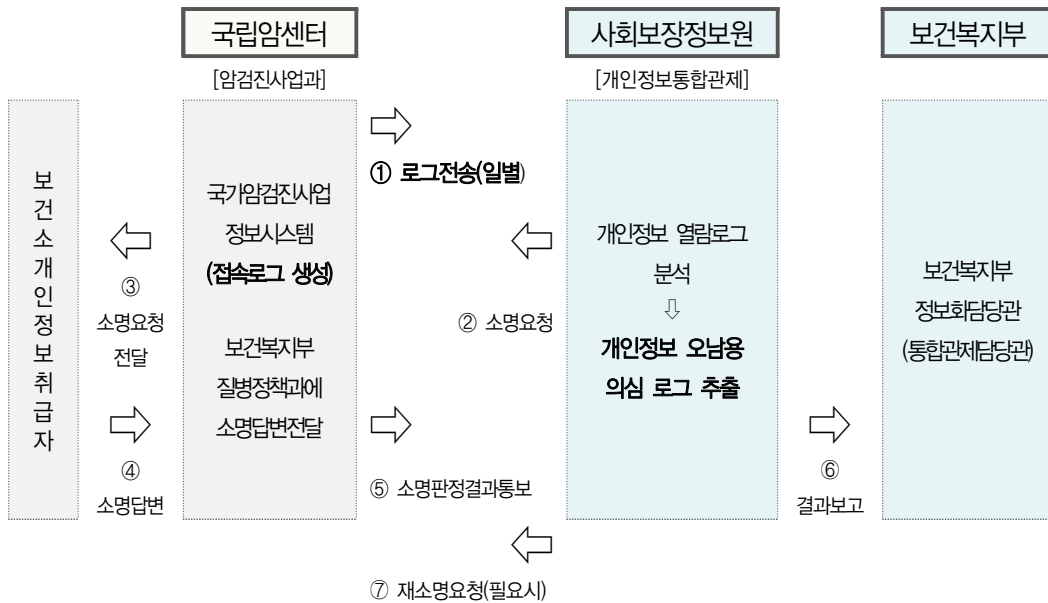
2) :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여부가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부록 6 개인정보보호 통합관제

1 개인정보 관제센터 운영

- 보건복지 개인정보 통합관제 체계가 구축됨에 따른 개인정보 통합관제 철차와 개인정보 취급급자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용에 따른 세부 판정기준 및 징계 기준 내용임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제80조(판정기준 표준화), 제88조(개인정보통합 관제센터 운영)

2 소명처리절차



- ①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접속로그 생성 일단위 로그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로 전송
- ②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의심로그가 발생시 기관으로 소명요청
- ③ 국립암센터 담당자는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 관련자에게 소명요청을 전달(E-mail 등을 활용)

- ④ 소명요청 대상자인 개인정보 취급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 내용을 국립 암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국립암센터 담당자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 판정요청
-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 제8조제2항 보건복지부의 관제담당관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해야 함
- ⑤ 국립암센터 담당자는 개인정보통합관제에게 소명 판정 결과를 통보(통보방법: 보건복지 개인정보관제 시스템 등록)
-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명답변을 검토한 판정결과를 센터에 제출
 -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에서 재소명 요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추가 소명자료 및 재판정 결과를 센터로 제출
- ⑥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실로 결과 보고 후 종료(단, ⑦ 재 소명 요청이 필요할 경우도 있음)

3 징계기준

- (추진근거)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81조(징계기준 표준화)
-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 등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취급자의 단순과실(잘못선택, 오타입력, 사용법 미숙 등)에 대해서는 담당 자는 재발방지 교육을 시행. 단, 단순과실 여부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서면으로 설명 하지 못 할 경우 경고 조치함
- 지자체차단체장은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3개월 이내 해당사례를 조사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담당자에게 통보
 - 징계조치 결과가 “공무원 징계기준”에 비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재 징계를 권고 할 수 있음

○ 공무원 징계기준

□ 비위유형별 징계 양형기준

1) 개인정보 목적외 열람·이용·유출에 따른 징계 수위

비위의 유형 및 개인정보의 종류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②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개인정보 무단조화·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감봉, 견책)

①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 1) 개인정보를 1천명 이상 유출하여 통지 대상이 되는 경우(법 34조제3항)
- 2) 위반 횟수가 반복되는 경우
- 3) 위반으로 인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거나 우려되는 경우

② 고의, 중과실, 경과실 구분

구분	정의	예시
고의	손쉽게 불법, 위법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하는 경우	본인의 금전적 이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 정보를 열람 또는 유출하는 경우
중과실	직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하는 경우	본인의 호기심에 의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경과실	일반적으로 보통사람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결여하는 경우(산만한 관리자의 주의를 결하는 과실의 경우)	대상자를 잘못 선택하여 1-2자리 착오입력으로 인한 제3자의 정보 열람

2) 개인정보 중요도에 따른 징계 수위

※ 민감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 유출 시 상기 징계수위보다 한 단계 가중하여처벌 수위 적용

구분	개인정보 유형에 따른 정의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중요·고유식별정보	- 대상기관이 정의한 중요한 개인정보 -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일반 개인정보	- 상기 개인정보를 제외한 기타 일반 개인정보

3) 접근권한(공인인증서 등 사용자 계정) 부정 이용에 따른 징계 수위

접근권한 관리 위반자	최소 징계수위
본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 등 사용자계정)을 타인에게 부여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한 자	견책
타인의 접근권한(공인인증서 등 사용자계정)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	견책

□ 연대책임 및 비정규직에 대한 징계 양형기준

1)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와 관리 책임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	분야별 책임관(운영 책임관) 최소 징계수위
파면 - 해임	경고
강등 - 견책	주의

2)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비정규직(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포함)등에 대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	조치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정직 이상의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퇴사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취급자 소명답변 및 판정결과

		결		관제업무 담당자		관제담당관	
		재					
구 분	내 용						
소명 요청 정보	조회일시						
	취급자 정보	이 름			사원ID		
		소 속					
		사용내역					
	처리 내용	피열람자명					
		시스템명					
		사용내역	생년월일	프로그램ID	프로그램명		
	소명 요청 사유						
답변 내용							
참고자료	※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판정결과	적정 / 부적정						

2020년도 국가 암검진 사업안내

- 발행일 2020년 3월
 - 발행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편집·인쇄 / (주)이문기업